

발 간 등 록 번 호

NCRC-04-23-043-12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3. 12.

책임연구원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김세원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세원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 용 변호사/법무법인 인
연구보조원 정 현 박사/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 학대유형 분류에서 중복학대인 경우에도 주된 내용에 따라 각각 신체, 정서, 성적 학대, 유기·방임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에도 형식에 관계없이 <판결의 의의>로 기술하였다.
3. ‘소송경과’는 연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 기재하였다.
4.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였다.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판례의 경향 분석

아래와 같은 변화가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 미친 영향과 판례의 경향성을 탐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7-2019년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발간 이후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양형기준 강화 등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가 2020-2022년 사이에 선고된 아동학대 사건 판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나. 아동학대 현장의 실무 대응능력 제고

최근 판례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판결의 의의를 분석하고 소개하여 판례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근래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모든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에 학대유형별로 의미 있는 판례를 이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이해와 더불어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함으로써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등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보다 올바른 대응방향을 제고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및 아동학대 사건 조사와 사례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판례 수집과 판례 선정 및 판례 연구의 과정으로 행해진다.

먼저 선고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집하였다. 판례 수집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

별법) 위반 사건 및 기타 아동학대 관련 행정사건 등을 공개된 판례 검색 시스템(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케이스노트, 엘박스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례는 2020년에 선고된 1,558건, 2021년에 선고된 2,025건, 2022년에 선고된 1,907건 등 모두 5,490건에 이른다.

연구 대상 판례를 선정할 때에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응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실무상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에 앞서 전달받은 현장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선정해 줄 것, 판례 분석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외에도 학교 등 시설에서의 학대 사례를 추가해 줄 것, 참조판결(유사판례, 반대판례)에 대한 예를 들어줄 것, 판례의 사건번호를 적시해 줄 것, 가능한 한 사건 개요, 판결의 의의, 양형기준과 양형 관련 논점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 줄 것, 학대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서학대 판례의 분량을 늘려 줄 것,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에 애매하거나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 판례 등을 소개해 줄 것 등이 그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더해 위와 같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선정된 판례가 가지는 실무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

선정된 판례는 기존 판례집의 예에 따라 제1부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와 제2부 보육·교육시설 등의 아동학대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3부에서 무죄판결과 그밖에 의미 있는 판례를 다루고 있다.

개별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소송경과, 결론, 양형, 판결의 의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판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제목과 판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쉽게 참조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판례와 선정된 판례의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연구의 개요

연도별 수집 판례	학대유형	제1부 수록 판례	제2부 수록 판례	제3부 수록 판례	
2020년 - 1,558건	신체학대	9건	6건	무죄판결	12건
	정서학대	22건	30건		
2021년 - 2,025건	성적 학대		15건	기타	5건
	유기·방임	15건	2건		
2022년 - 1,907건	중복학대		13건		
	사망사건	3건			
계 5,490 건		계 49건	계 66건	계 17건	

3. 연구의 결과

가. 일반론

2022년 6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과 양형기준의 수정, 강화가 있었다. 다만, 변경된 양형기준의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그럼에도 본 연구 중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652 판결).

다음으로 2021년 1월 26일 종래 친권자의 아동학대 정당화 악용 소지가 있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이 폐지되었다. 학대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 무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직접적으로 징계권 폐지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법적으로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취업제한 명령의 본격적 적용을 판례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한편,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도(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459 판결) 눈길을 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다.

나. 학대와 훈육의 경계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실무상 어려운 문제이다. 아동학대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가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의 장애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세계 잡는 등의 행위가 신체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선택하였고, ② 그것이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이었다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밖에 무죄판결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관계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판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지적장애 2급 피해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른 뒤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고,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똥똥하냐”고 말한 사건이다.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경우 신체적 학대가 성립하지 않는 관계(보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는 판결도 많기 때문에 위 법리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판례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라. 정서학대의 증가와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여전히 정서학대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537 전원재판부 결정). 종래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체학대와 성적 학대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정서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을 강제로 재우는 행위, 억지로 먹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이나 새로이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반려동물을 괴롭히는 행위, 아동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행위, 부부 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학대를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욕설과 혐오성 발언에 대하여도 정서학대를 인정한다.



연구의 개요

마. 성적 학대의 다양화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이다.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성적 학대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신고 있는 양말을 매수하려 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4. 2020고단165, 431 판결), 아동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1663 판결) 등이 주목을 끈다. 다만, 남자 아동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얘기를 한 행위를 성적 학대가 아닌 정서학대로 판단한 예도 있어(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합19 판결) 성적 학대와 정서학대의 구별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학대가 다수 발견되고 향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판례는 카카오톡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아동에게 전송하는 행위, 휴대폰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시키는 행위, 휴대폰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에 대해 모두 성적 학대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아동과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15세의 나이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우며(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56 판결),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은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66 판결).

바. 유기·방임 및 중복학대

유기 및 방임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베이비박스 유기한 경우나 더러운 환경에 방치한 경우, 홀로 지내게 한 경우 등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었다.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단순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필수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에 아동학대로 인정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214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206 판결). 이와 달리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유기,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친모가 친부의 아동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거나 분리하지 않은 것이 친부의 아동학대 방조가 아니라 친모 본인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73 판결). 단순한 방조를 넘어 방임을 인정한 경우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격리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담임교사가 제지하지 않은 행위를 방조로 보기도 한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3127 판결).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적 방임행위는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초·중등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교육적 방임에 해당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1219 판결).

사. 사망사건 관련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실무상 아동학대살해인가 아동학대치사인가가 문제된다. 미필적이거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해결의 열쇠이다. 관련하여 무엇보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된 양천구 입양아동 살인 사건이 단연 주목을 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등 판결). 검사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2심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되기도 하였다.

한편, 친모가 번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3세의 피해아동을 홀로 둔 채 외출하였다가 77시간 만에 귀가하여 탈수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652 판결)은 앞서 보았듯이 2021년 3월 16일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었다. 친모의 살인 고의가 인정되었고, 1심에서 징역 20년, 2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점, 친모의 지능지수가 낮은 점과 양육의지가 근원적으로 없지 않았던 점 등 반영하여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6세)을 유기하던 중 살인의 고의를 일으켜 계속 유기하였음이 인정되어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까지 함께 처벌되어 징역 30년이 선고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등 판결)에서도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된 바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되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개요

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무죄판결)

아동학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아동학대 해당 여부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학대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판례를 비교, 분석,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아동학대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무죄판결 이유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행위라도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고의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의 보충성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복지적 측면보다 형사 처벌받는 측면의 학대 판단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신체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사례관리 등을 위한 아동학대 판단 여부에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집에 실린 무죄판결들은 아동학대 해당 여부, 학대와 정당한 훈육의 경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우선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해자 본인의 증언 없이 더 이상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아동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한편, 질문자에 의한 피압시성,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진술과정에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비밀녹음이 문제가 되었다.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하여 비밀녹음을 한 경우에 대화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대화가 아니어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8노1809 판결,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2525 판결)이 있는 이후, 판례의 경향은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아동의 옷이나 가방 등에 녹음기를 소지하게 하여 몰래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향후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아동학대 사건과 양형

연구 내용에 실무상 관심사인 주요 양형의 이유와 형량을 기재하였다. 특히 실형인가 집행유예인가는 양

형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친부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행 신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4년의 장기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판결에서 아동학대 사건 양형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고단150 판결).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거나 가벼운 점,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범행 결과의 경미함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대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 감정상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는 아동학대를 넓게 인정하는 대신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임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2022년 6월 1일부터 수정·강화된 아동학대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다. 양형기준의 수정이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양형기준이 수정된 범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시행시기가 2022년 6월 1일부터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수정·강화된 양형기준의 영향으로 보이는 판결(아동학대살해로 1심 징역 20년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652 판결)들이 있었다.

심급에 따른 양형 변동의 경우에는 가중, 감경 요소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감경요소로는 주로 피해자(보호자 포함)와의 합의, 피해 상황,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환경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가중요소로는 사망 등 중한 결과의 발생, 범행 은폐 시도(거짓말 등) 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도 형량이 감형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차. 새로운 유형으로 생각되는 보복성 학대,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신의 자녀를 때린 아동에게 복수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2020고단3219 판결), 자녀의 친구에게 자녀와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말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738 판결), 층간 소음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소음을 야기한 행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1757 판결), 자녀의 같은 반 학생 어머니의 보복성 발언(대구지방법원 2020. 9. 8. 2020고정800 판결),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른 행위 등(대구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고정800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보복성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욕설, 혐오성 발언을 정서학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주목된다. 즉, 층간 소음 분쟁 중 이웃 아동에게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듣게 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정110 판결), 아동을 향해 아동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얘기를 한 행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797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1763 판결) 등이다.



연구의 개요

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 판례 수집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를 다수 검토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이 현실사회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타. 기타(언론보도금지조항 합헌, 양벌규정 등)

언론은 아동학대 문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현하느라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 특히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생아실 내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도록 한 행위와 산부인과 원장의 책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729 판결),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발생으로 인한 원장 자격정지처분(서울행정법원 2022. 2. 9. 2021구단62136 판결)도 알아 두어야 할 판례로 생각된다.

4. 결어

본 연구와 관련해서,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 징계권 폐지, 양형기준 수정 등 변화의 인식과 확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점 찾기 등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 Analysis of child abuse cases

It is necessary to detect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following changes on child abuse case trends.

First,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2017–2019 collection of child abuse case, there have been changes in child abuse–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making child abuse investigations public, abolishing the disciplinary right of parents, and sentencing guideline for child abuse c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se changes in child abuse–related laws and systems on child abuse case judgments ruled between 2020 and 2022.

Second, as times have changed along with changes i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caused by the coronavirus infection, it is thought that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cases has also changed. As a result, there may be changes in case law in child abuse cases.

B. Improv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child abuse practices

It analyzes and introduces the significance of child abuse–related judgments that have recently appeared in case law, and is useful for carrying out field work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case law. This makes it possible to improve the expertise of human resources dealing with child abuse.

In recent years, many child abuse cases have occurred. However, it is not possible for those involved in child abuse–related work to experience every incident. B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case for each type of abuse, you can indirectly come into contact with various cases.

By understanding child abus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legal principles of judicial precedents for cases that have actually occurred,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Research overview

legality of work such as child abuse investigation and case management, and improve the correct direction of response.

Ultimatel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human resources engaged in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currence prevention, as well as child abuse incident investigation and case management.

2. Research method and content

A.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electing, and researching court cases.

First, we collected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as well a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rom January 1, 2020 to December 31, 2022, based on the date of sentencing.

The following poin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the case. .

First, we tried to select cases that seemed to have practical significance. The opinions received from the field prior to the research are taken seriously. While researching, I tried to reflect as much as possible the demands of the field.

B. research content

The selected cases was divided into Part 1: Child Abuse by Relatives, etc., and Part 2: Child 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etc. The third part deals with acquittals and other significant precedents.

Regarding individual cases, the main contents were the issues at issue, the case (facts), the conclusion, the quantum, and the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3. Research results

A. General

In June 2022, a new crime of child murder was established, and sentencing guidelines were revised. During this research, we were able to confirm a case in which the newly established guideline was applied.

Next, on January 26, 2021, the disciplinary right under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which previously allowed parents to abuse and justify child abuse, was abolished. But we were unable to confirm any cases in which the abolition seemed to have had an impact.

B. Detail

Meaningful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in many respects. The details will be published in a collection of casebooks to be published.

Basically child abuse conception is broadly accepted. However, in some cases, courts may require strict elements. You will be able to see a variety of court opinions on everything from whether or not child abuse can be recognized to sentencing.

4. Conclusion

Regarding this research, continued interest and analysis of court cases is important. This is because changes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disciplinary rights of parents and the revision of sentencing guidelines are expected to take time to be recognized and applied. In addition, more attention is needed to various issues that are emerging in society, such as the balance to settle down the conflict of right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목 차 | Contents

제1부 부모,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 _ 1

I. 신체학대 3

1. 친모가 아들인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시킨 행위 5
2. 계모와 친부가 자녀들로 하여금 상호 폭행하도록 시킨 행위 6
3. 친모 등이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행위 8
4. 부모가 보험사기 범행에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려고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10
5. 친모가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11
6. 부모가 쇠집게로 자녀의 종아리를 스스로 때리게 한 행위 13
7. 친부가 손으로 자녀의 머리와 볼을 때리고, 과도로 손목을 자르겠다고 말한 행위 15
8. 아버지가 손과 주먹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2회 때린 행위 17
9. 친모가 아동의 한쪽 팔을 양팔로 잡아끈 행위 19

II. 정서학대 21

1. 친부가 자녀에게 친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 행위 23
2. 친부가 자녀에게 친모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한 행위 25
3. 부모가 1세 아동에게 가정폭력 목격하게 한 행위 27
4. 친부가 자녀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 28
5. 친부가 자녀에게 욕을 하고 휴대폰을 발로 밟아 깨뜨린 행위 29
6. 친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 30
7. 친부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32
8. 친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의 형제를 때리고 자녀의 형제에게 욕설한 행위 34
9. 친부가 자녀를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한 행위 35
10.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37
11. 계모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바보, 콩바보”라고 말한 행위 39
12. 친모가 이혼한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자녀를 전 남편의 직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행위 40
13. 친부가 딸에게 ‘엄마의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보낸 행위 41
14. 친모가 자녀에게 마늘과 양파, 생강을 먹게 한 행위 43
15. 부모가 새벽에 귀가한 자녀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한 행위 44
16. 친부가 자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46

17. 친부가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47
18. 친부가 자녀에게 “너 안 오면 게임기, 휴대폰 다 부셔 버린다.” 등으로 말한 행위	49
19. 친부가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칼을 고르는 시늉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51
20. 이혼소송 중인 친부가 면접교섭 중인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행위	53
21. 친모가 친부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딴냐”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한 행위	55
22.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깨비 형상이 나오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행위 ..	57

III. 유기, 방임 59

1. 친부가 자녀를 친척 집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61
2. 친모가 영아인 자녀를 3차례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행위	63
3. 친모가 7세인 자녀를 2개월 동안 혼자 살게 한 행위	65
4. 친모가 떠도는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불결한 환경에 노출시킨 행위	66
5. 친모가 집안에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여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거주하도록 한 행위	68
6. 친모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녀를 방치한 행위	69
7. 친모가 자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은 행위	71
8. 친부가 자녀의 병원비 지급에 관한 친모의 요구를 거부한 행위	73
9. 친모가 친부의 학대를 제지하지 아니한 행위	74
10. 친모가 자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행위	76
11. 친모가 자녀의 의무교육 이수를 거부한 행위	78
12.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79
13. 친부가 신생아인 자녀의 입에 공갈 젓꼭지나 젖병을 고정시키는 행위	81
14.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83
15. 친모가 집주인에게 자녀를 맡겨둔 채 나간 행위	85

IV. 사망사건 87

1. 친모가 3세 자녀를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하여 사망케 한 행위	89
2. 친모가 자녀에 대한 친언니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91
3. 친부가 자녀인 자폐아동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덮어맨 뒤 아동의 몸을 세게 안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93



목 차 | Contents

제2부 보육, 교육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_ 95

I. 신체학대 97

1. 유치원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 99
2.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세계 흔드는 등의 행위 100
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이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쓰고 다니자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운 행위 등 102
4. 어린이집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 104
5. 스포츠강사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축구장 밖으로 끌고 간 다음 뒷목을 잡아 누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행위 106
6. 자신의 자녀를 때린 아동에게 복수한 행위 108

II. 정서학대 109

1. 어린이집 원장이 2세 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행위 111
2. 초등학교 교사가 컴퓨터로 피해아동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글을 써서 다른 학생들이 보게 한 행위 ... 113
3. 중학교 교사가 아동이 야한 책을 보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뽀뽀를 시킨 행위 115
4. 중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행위 117
5. 유치원 교사가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한 행위 119
6.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에게 토라이 세포가 있다고 욕설한 행위 121
7.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아동과 놀지 말라고 한 행위 123
8. 축구클럽 감독이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아동을 따돌리게 한 행위 124
9.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강제로 재우고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한 행위 126
10. 아기사포초단 교사가 아동에게 수첩을 집어 던지고 주워가게 한 행위 128
11. 아동에게 친모에 대해 모함하는 말을 한 행위 130
1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손으로 다른 아동을 때리게 한 행위 131
13.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 132
14.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 133
15.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 135
16. 이웃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 136

17.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	138
18.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과 반복적으로 서로 “싫어”라고 얘기하는 행위	139
19.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씻는 시간을 정해두고 아동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행위	140
20.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행위 등	142
21. 중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화로 욕설을 한 행위	144
22. 성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남자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146
23. 성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얘기를 한 행위	147
24. 멘토링 수업을 하다 그만 둔 사람이 아동에게 “너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은 가겠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149
25. 보육교사가 손가락으로 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한 부위를 찌르는 행위	151
26. 이웃이 아동에게 아동의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얘기를 한 행위	153
27. 이웃이 아동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듣게 한 행위	155
28. 자녀의 친구에게 자녀와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말한 행위	156
29.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층간 소음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소음을 야기한 행위	158
30.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른 행위 등	160

III. 성적 학대 ————— 163

1.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	165
2. 가정방문교사가 아동 동의하에 입맞춤을 하고 음란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	167
3. 대안교육기관 원장이 아동에게 성관계 경험을 물은 행위	168
4.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행위	170
5.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수회에 걸쳐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진 행위	172
6. 음식점 사장이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행위	174
7. 중학교 앞 노상에서 여중생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175
8. SNS 메시지를 통하여 키스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글을 보낸 행위	177
9. 아동이 신고 있는 양말을 매수하려 한 행위	179
10. 피해아동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180
11. 학원 강사가 17세인 아동과 합의하여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한 행위	181
12. 성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	183
13. 15세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한 행위	185



목 차 | Contents

14.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에게 남자인 줄 알았다고 말한 행위	187
15.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부인 시리즈의 영화가 많이 나왔다고 말한 행위	189

IV. 유기, 방임 191

1.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 내에서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도록 한 행위	193
2. 아동위탁시설의 장이 입소아동에 의한 폭력행위를 방치한 행위	195

V. 중북학대 197

1.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왜 찡찡대. 시끄러워.”라고 말한 행위	199
2.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 시간에 아동에게 한 ‘김밥말이’ 행위	201
3. 동료 보육교사가 다리로 아동을 압박하는 행위를 방조한 행위	203
4. 보육교사가 우는 아동을 내버려 두거나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 행위	205
5.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인 행위와 교사가 이를 방조한 행위	207
6.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학년 아동들을 어깨동무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시킨 행위	209
7. 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아동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시킨 행위	211
8. 중학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213
9.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복도에 엮드리게 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한 행위	215
10. 고등학교 교사가 장애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른 뒤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고,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고 말한 행위	217
11. 고등학교 기숙사 직원이 학생에게 부당하게 벌점을 많이 주어 기숙사에서 퇴출하려고 한 행위 ...	219
12. 학원 원장이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아동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1회 내리친 행위	221
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운전 중 아동을 야간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비탈진 도로에 하차시킨 행위 ..	223

제3부 무죄판결, 기타 _ 225

I. 무죄판결 227

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든 행위	229
2. 보육교사가 아동의 귀를 붙잡은 행위	231

3. 어린이집의 교사가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을 혼자 앉아 있도록 한 행위	233
4.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마스크를 거칠게 벗긴 행위	234
5. 초등학교 교사가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훈육한 행위	236
6.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는 등의 말을 한 행위	238
7.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투명인자’ 벌칙을 수행하게 한 행위	240
8. 초등학교 교사가 훈육을 위해 아동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에 상처가 난 경우	242
9.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243
10.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	245
11.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이 원생인 아동의 입을 틀어막은 행위	247
12. 학원 원장이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한 행위	249

II. 기타 ————— 251

1.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피해아동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53
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발생으로 인한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정당성	255
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처분의 적법성	257
4.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CD의 증거능력	258
5. 아동학대 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가 식별되는 언론보도금지 조항의 합헌성	260

참고문헌 _ 263

판례색인 _ 264

제1부

부모, 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



I

신체학대

1

친모가 아들인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시킨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정155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아들인 피해아동 D(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녀이자 D의 형인 E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옆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E는 줄넘기로 옷을 벗고 옆드린 피해아동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정155 판결)	벌금 300만 원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아동을 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또 다른 자녀인 피해아동의 형에게 때리도록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으나, 아들인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폭행하게 한 행위로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비록 자신이 직접 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인 형으로 하여금 동생을 폭행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 ▶ 한편, 피해아동 D를 때린 E 역시 아동이라면, 자신의 동생을 때리도록 하였으므로 E에 대한 정서 학대도 인정될 수 있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2

계모와 친부가 자녀들로 하여금 상호 폭행하도록 시킨 행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401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 A(계모)와 B(친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해아동 C(10세), D(8세)는 피고인 B의 친자녀들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치고 받고 해서라도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가려라.”라고 하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때리게 하여, 피해아동 D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아동 C의 왼쪽 팔뚝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또한 다른 날,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른 날, 피해아동 D가 가방에 쓰레기와 빈 페트병을 넣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뒷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가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때리도록 하여 피해아동들이 서로 때리는 사실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401 판결)	A: 벌금 300만 원 B: 벌금 200만 원 A와 B: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2심 (청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노1375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결론

계모와 친부가 위와 같이 자녀인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서로 때리게 하거나 직접 때리는 한편, 계모가 때리는 것을 친부가 말리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절차를 거치면서 아동학대와 잘못된 훈육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남매인 아동들을 상호 폭행하도록 한 것 자체는 아동들에게 큰 정서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 A가 계모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낮은 피해아동들이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과 엄마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 A가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을 하려고 했었던 점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피고인들에게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의 기회와 피해아동과 함께 하는 상담으로 상호 간 이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가족 간 유대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3

친모 등이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행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455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4세), C(2세)의 계조모이고, 피해아동 D(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을 돌보다 몸살 기운으로 피곤하여 집안의 조명을 끄고 피해아동들을 일찍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잠들게 되었다. 같은 날 22:30경 피해아동들이 칭얼거리며 잠을 자지 않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기로 마음먹고, “너네 잠을 안 자고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약을 먹고 진정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개를 반으로 쪼개어 피해아동 D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스틸녹스정 1/2을 다시 반으로 쪼개어 피해아동 B, C에게 각각 주어서 먹게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4553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판결 내용

| 결론

친모 등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아 수면제를 먹여 재움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B, C의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아동들에게 중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들에게 처방받지 않은 수면제를 먹여 재운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유사판결

- ▶ 아이돌보미가 피해아동(남, 생후 16개월)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 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항불안제인 리보트릴정 1/4 조각을 분유통에 넣고 흔들 후, 2회에 걸쳐 분유통 젓꼭지를 통해 피해아동의 입에 가져다 대 강제로 먹이려고 한 행위는 설사 피해아동 이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731 판결).

I

신
체
학
대

II

정
서
학
대

III

유
기,
방
임

IV

사
망
사
건

4

부모가 보험사기 범행에서 보험금을 더 많이 타려고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3769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세)의 부모들인 피고인들은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21:10경 쏘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3769 판결)	친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친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결론

피해아동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사고를 내어 피해아동을 다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나이가 어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아동을 차량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한 판결로, 피해아동들을 일종의 범행도구화한 사건에서도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5

친모가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1103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4세)의 친모인 피고인이 2021. 1. 18. 06:20경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1103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도 같이 처벌받게 되었고, 과거에도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행위가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유사판결

- ▶ 피해아동(여, 16세)이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90 판결)

6

부모가 쇠집게로 자녀의 종아리를 스스로 때리게 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1고단197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아동(8세)은 이들의 아들이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아동의 종아리 부위를 5회 때렸다. 또 다른 날에는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쇠집게를 가져오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하여 종아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1고단1976 판결)	피고인 A: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하는 한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아동이 우호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판결의 의의

- ▶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진술을 반복하고, 상황 파악의 어려움과 기억력의 한계를 보여주더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전체적 일관성이나 내용의 구체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릴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빠한테 어떻게 벌을 줘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진술의 전후 맥락과 함께 피해아동이 피고인 A에 관하여 두려움을 거듭 호소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아동이 피고인과의 가족 관계를 감안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7

친부가 손으로 자녀의 머리와 볼을 때리고, 과도로 손목을
자르겠다고 말한 행위

(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고단15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집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B(8세)로부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과거 피해아동 D(7세)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사실에 대해 훈계하던 중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아동의 목살을 잡고 피해아동에게 “너 자꾸 그러면 아빠가 네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고단 150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압수된 과도 1개 몰수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 B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또 다른 자녀인 피해아동 D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모친과 달리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피고인이 평소에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 B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는데 폭행의 정도가 강력했으며, 피해아동 D에게 과도를 들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아동 D는 겁에 질려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갔고, 이를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린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가정 내에서 폭행 또는 폭언을 하는 등 일반적인 행실도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법원에서는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본 점들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하여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8

아버지가 손과 주먹으로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2회 때린 행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2. 선고 2022고단5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A와 사실혼 관계로, A는 총 6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피해아동 B(남, 13세)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피해아동 C(여, 9세), 피해아동 D(남, 8세)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아동 C 등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 C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뒷자석에 있는 동생들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C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 동생들과 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툰다는 이유로, '새끼들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D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가족 및 지인 등 10여 명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B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고기 굽는 집게를 피해아동 B에게 던지면서 '한다이 하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아동 B의 목살을 쥐고 거실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2. 선고 2022고단55 판결)	징역 6개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III 결론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아동 C, D, B에 대해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아동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 먼저 피고인의 먹살을 잡은 것에 대한 것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대응, 피해아동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아동 C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다툼이 있어 주변에서 말렸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세부적인 진술이 피해아동의 진술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해아동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9

친모가 아동의 한쪽 팔을 양팔로 잡아끈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66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남, 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내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태권도 강사가 이를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한쪽 팔을 양팔로 잡고 강하게 수차례 잡아끌었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 1665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인 만 6세의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아동의 의사에 반해 팔을 강하게 잡아끌음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위 아동학대행위와 더불어 이를 말리는 모친을 폭행한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결이다.



II

정서학대

1

친부가 자녀에게 친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단506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10세)와 D(2세)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아동들을 B 소유인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 잠시 정차한 사이에 다른 차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라. 너는 정말 쓰레기다. 너 크게 다칠 거야.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B 승용차의 보닛과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친 다음, 자신의 차를 운행하여 B의 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그러다가 차에서 내려 B 차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머리로 들이박은 후 다시 차에 올라타 앞 범퍼 부분에 충격을 가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단 5060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친모를 폭행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이혼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아동들이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하였다(2022. 6. 22. 시행 개정법률).

- ▶ 이 사건 판결은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에 선고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11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부인이자 피해아동의 친모인 E가 피고인 몰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약 8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분무기로 E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욕설을 하며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4494 판결).

2

친부가 자녀에게 친모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24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C(7세), 또 다른 자녀 D(2세)의 친부이다. 친모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별거 상태에 있다. 친모가 피해아동 C와 다른 자녀를 전적으로 보호,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 앞에 이르러 친모가 승용차에서 먼저 하차하자 친모와 혐의한 내용에 반하여 자녀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자녀들을 태운 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가려 하였으나, 다른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막혀 진행하지 못하고 되돌아와 자녀 D를 승용차에서 하차시켰다.

친모가 하차한 자녀 D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아동 C를 탑승시킨 채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였고 이에 친모가 피해아동 C를 하차시킬 것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손잡이를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친모를 약 30m 가량 끌고가는 모습과 친모가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아동 C를 하차시키려 하자 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친모의 팔과 어깨 등을 다치게 하는 모습 등을 피해아동 C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246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 내용

I 결론

친부가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친모가 매달려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친모가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음에도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여 다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행(주거침입미수, 특수상해, 미성년자약취미수, 미성년자약취 등)이 함께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에게 친모가 다치게 하는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가 1세 아동에게 가정폭력 목격하게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261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먹던 음식을 치우는 문제로 C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해자 B가 접시를 던져 피해아동 C로 하여금 접시에 맞게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따라서 피해아동 C가 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피 흘리게 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2618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 성향, 전후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일관된 판례였으나, 아동이 몇 살부터 정서학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례는 부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연령이 1세로 적은 피해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에 대해서도 정서학대를 인정하였다.

4

친부가 자녀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2. 선고 2018고단990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11세), C(9세), D(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 B를 깨워서 “씨발 지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아동에게 술을 따르게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다른 날, 술을 마시다가 피해아동 B, C, D를 얹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2. 선고 2018고단990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2심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 2062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결론

피해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녀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 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학대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아동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면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5

친부가 자녀에게 욕을 하고 휴대폰을 발로 밟아 깨뜨린 행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6. 16. 선고 2020고단48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거지 내 주방에서 딸인 피해아동 C(13세), D(11세)에게 “개년들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 밑으로 여러 차례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트렸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6. 16. 선고 2020고단48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판결 내용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림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아동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전 배우자로 변경하는 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고등학생 아들을 계속 보호,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기물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I

신
체
학
대

II

정
서
학
대

III

유
기,
방
임

IV

사
망
사
건

6

친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1261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 D(남, 12세), E(여, 7세)의 친모는 2021. 1. 27.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유리관에 물과 함께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부터 피해아동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밤새 잠을 자지 않으며 필로폰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D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 1261 판결)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심 (인천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노 1762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중독치료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 앞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에 대해 함께 처벌을 받는데다가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자신의 마약투약 행위를 아동들로 하여금 보도록 의도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아동 앞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7

친부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26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남, 17세)의 친부인 피고인은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싱크대에 올라가 음식을 먹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나무 막대기로 고양이의 배를 10대 가량 때렸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267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81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반려동물인 고양이의 배를 10대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다른 학대행위의 피해아동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유사판결

- ▶ 주거지에서 처와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식칼 2자루를 들고 와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의붓딸인 피해아동(여, 16세)에게 보여준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710 판결).
- ▶ 주거지에서 애완묘가 자신의 발에 오줌을 싸다는 이유로 자녀들인 피해아동 B(여, 8세), C(남, 5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애완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집어던져 죽인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2955 판결).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8

친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의 형제를 때리고 자녀의 형제에게 욕설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정1906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 A(남, 6세), B(남, 4세), C(남, 3세)의 친모가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C가 있는 자리에서 A와 B를 때리고 “개새끼,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폭행 및 욕설 행위를 보고 듣게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정1906 판결)	벌금 100만 원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고 욕하는 것을 다른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보고 듣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부수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듣게 한 것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9

친부가 자녀를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한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52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4세)의 친부가, 2019년 12월경 동생과 다투어 울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그만 울어. 계속 울면 내쫓을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아동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불상의 시간 동안 해가 저서 어두운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520 판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폭력범죄 전과가 3차례 있고,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및 다른 자녀들에 대한 다수의 아동학대행위를 함께 처벌하나, 피해아동의 모친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향후 피해아동과 함께 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을 현관문 앞에 내보낸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 ▶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짧은 시간 피해아동을 현관문 앞에 세워둔 것이고, 현관문에 설치된 투시경을 통해 피해아동을 계속 관찰하였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을 현관문 앞에 내보낸 이후 투시경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지켜보았다고 하더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라도 피해아동이 이를 알지 못한 이상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02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여, 9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아동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으나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친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아동이 피해아동의 친모와 함께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029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 3771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 주거지의 창문을 깨고 피해아동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친모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그밖에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함께 유죄판결을 받는 사정과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의 주거지 창문을 깨고 강제로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집 밖으로 도망가도록 한 행위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죄와 별도로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1

계모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바보, 콩바보”라고 말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493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5세)의 계모가 피해아동이 바닥에 흘린 라면 국물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왜 아빠를 시키냐, 바보, 콩바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아동이 빨래를 세탁기가 아닌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빨래통에 넣지 말고 세탁기에 넣어, 바보야, 콩바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493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계모인 피고인이 경계성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이 “바보, 콩바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발언 내용이나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뿐만 아니라 그 배경 사실까지 모두 고려하여 해당 발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지를 따져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 ▶ 특히, 피해아동의 친모도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바보가 바보를 낳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위 발언들이 피해아동으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

친모가 이혼한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자녀를 전 남편의 직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177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5세)의 친모가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이혼한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2021. 2. 1.부터 2021. 2. 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전남편의 직장으로 데리고 가 직장 정문 앞에서 매회 짧게는 약 1시간, 길게는 약 13시간 서 있도록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 1777 판결)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2심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 1273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이혼한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운 날씨에 전남편의 직장 앞에 자녀인 피해아동을 서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동 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폭행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행에 대해 함께 유죄판결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혼한 전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피해아동을 불특정 다수의 낯선 사람들이 다니는 야외에 서 있게 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13

친부가 딸에게 ‘엄마의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보낸 행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8. 선고 2020고단232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5세)의 친부가 피해아동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2회 전송하고, “엄마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8. 선고 2020고단2328)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심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 265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불안감을 줌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딸에게 엄마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엄마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어 보게 하는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유사판결

- ▶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의 아들인 피해아동(11세)에게 ‘다음은 신랑한테 보낼게~~, 이쁜이 수술 아니, 자궁에 보정물 삽입해서 관계한 내용까지 보내줄게~~^^, 이혼을 하던지 쫓겨나던 그건 니 사정~~^^, 우리 모텔 들락거린 카드 내용서부터 세부적으로 정리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5257 판결).

14

친모가 자녀에게 마늘과 양파, 생강을 먹게 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61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남, 9세)의 친모가 피해아동에게 ① 2021. 7. 중순경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늘 1개와 양파 1개를 먹게 하고, ② 2021. 7. 말경 잔인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늘 3~4개와 양파 반개를 먹게 하고, ③ 2021. 8. 24. 저녁에 모바일 게임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들게 하였다가 피해아동이 식탁 의자가 무거워 제대로 들지 못하자 열린 생강 1개를 먹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6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모가 훈육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마늘, 양파 및 열린 생강 등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혀 함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피해아동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딸(18개월)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식사 중이 아님에도 훈육 목적으로 마늘, 양파, 열린 생강 등 먹기 힘든 음식을 먹게 한 행위가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다.

15

부모가 새벽에 귀가한 자녀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한 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90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6세)의 부모들은 2019. 8. 28. 03:30경 피해아동이 등교를 하지 않고 새벽에 뒤늦게 귀가하면서 현관문 벨을 누르자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해아동에게 “왜 들어 왔냐, 나가라, 벨 한 번만 더 누르면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90 판결)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 내용

결론

피해아동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새벽에 귀가한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찜질방에서 자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 피해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에도 부모, 자식 간으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평소 부모인 피고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새벽에 늦게 귀가한 자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한 행위도 훈육의 범위를 넘어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유사판결

- ▶ 피해아동(여, 13세)의 친부가 2018. 10. 13. 19:25경 전날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오기로 한 피해아동이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네 짐 다 챙겨왔으니 갖고 집 나가라. 안 가져가면 내다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2018. 10. 14.경 재차 전화로 “짐 싸놓았으니 나가라”고 하고, 2018. 10. 15.경 재차 전화로 “짐 싸놓았으니 나가라”고 한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086, 2021고단3529 판결).
- ▶ 피해아동(남, 16세)의 친부가 피해아동이 연락 없이 친구 집에 놀러갔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을 잠가 늦은 저녁시간에 피해아동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새벽에 야식을 먹으러 나갔다는 이유로 집 현관문을 잠가 새벽시간에 피해아동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4051, 2021고단332 판결).
- ▶ 피해아동(남, 8세)의 외조모가 피해아동이 태권도학원에 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내복만 입은 채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고단4445 판결).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16

친부가 자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185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8세), C(여, 14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아동들은 현재 아동보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휴대전화로 ‘이제 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빠한테 반기를 들어’, ‘그래 별별 떼게 만들어 줄게’, ‘OO아 오늘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라 부탁한다’, ‘아빠 내일 시골 갔다 와서 영원히 잘 거야’ 등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20여 차례 전송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1853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판례는 유형력 행사와 신체적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①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는 이르지 않은 학대행위는 물론 ② 유형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인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이 판결은 메시지 전송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의 의미를 확인한 판결이다.

17

친부가 보육원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고단3524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와 피해아동 C(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아동학대(방임)하여 피해아동들과 강제 분리조치 되었으며, 피해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당시 10세)에게 “아빠 없다는 소리 듣기 싫잖아? C 그기 시설에 있으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멍청한 누나 때문에 그제 뭐야 시설에서...”, “그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C 못나와, (중략) 거기서 집에 못 가게 했어?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이런 식이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멍청한 누나 땀에 니가 고생이다. 노트북 필요 없으면 집으로 보내.”, “부당하거나 불편한 거는 사진으로 다 보내줘. 그래야 C가 집으로 빨리 올 수 있어.”, “C가 동영상 보내주면 유튜브에 올릴 거야(중략), 아빠한테만 이야기해야 돼,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못 나와.”, “그기서 C 집에 안 보내는 거야 가사소송 할라고.”, “C는 고아 되기 싫지? 갖고 싶은 거 C가 돈 벌어서 다 사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중략) 만 19세 되면 돈 몇 푼 주면서 내보내거든. 그담부터는 개고생하는 거야. 부모한테 도움도 못 받고. C 11세지? 누나는 내년에 중학생인데... 폰도 없이 개고생해보라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총알이 박힌 종이박스에 피해자 B(당시 11세)의 옷을 넣어 우편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나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고단 3524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두 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아동학대(방임)로 인해 피해아동들과 강제분리조치된 상황에서 이 사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처럼 종전에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반복적,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8

친부가 자녀에게 “너 안 오면 게임기, 휴대폰 다 부셔 버린다.” 등으로 말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124, 2692(병합)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C(6세), D(3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B(29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다리로 피해아동 C의 몸을 짓누르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하자 “너 안 오면 게임기, 휴대폰 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들에게 “니네 엄마랑 살면 거지처럼 산다.”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모습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하고, 피해아동 C 소유의 닌텐도 게임기를 던져 피해아동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아동 C가 이를 보고 울자, 피해아동에게 “칼을 가져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게임기를 가지고 와 거실 창문을 열고 “내가 사준 것이니 던지겠다. 잘 봐라.”라고 하면서 창문 밖으로 게임기를 던져버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주방 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124, 2992(병합) 판결)	특수협박 및 2021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22년 6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너 안 오면 게임기, 휴대폰 다 부셔 버린다.”, “니네 엄마랑 살면 거지처럼 산다.”, “(게임기를) 내가 사준 것이니 던지겠다. 잘 봐라.”라고 말하고 게임기를 던져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나 이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는 가정폭력(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서류를 제출)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고, 이전에 아동학대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의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해아동들이 현재 가정 내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

친부가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칼을 고르는 시늉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5797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아버지로,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몰래 외출을 한 뒤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랑은 이제 끝이다”, “집에서 나가라 걸레 같은 년아”, “가출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라고 말을 하는 등 큰 소리로 폭언을 하고, 부엌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주방 서랍에 있던 칼들 중 1개를 고르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너 진짜 죽고 싶냐”, “빨리 안 오면 고양이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5797 판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너랑은 이제 끝이다” 등의 폭언을 하고, 아동이 보는 앞에서 칼을 고르는 시늉을 하였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아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아동에게 대한 폭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피해아동 앞에서 칼을 고르는 시늉을 하는 것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 이 판결에서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다치기 쉬운 존재이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아이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 수단과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법률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훈육 목적이라는 것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20

이혼소송 중인 친부가 면접교섭 중인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한 행위

(전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158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10세), 피해아동 C(9세)의 친부로 배우자인 D와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배우자가 양육하면서 2주일에 1회씩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만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와 피해아동 C로 하여금 이혼서류를 읽어보도록 한 후, “엄마가 너희를 키운다고 했다가 안 키우겠다고 말을 바꿨다. 엄마가 너희 양육비 주기 싫어서 다시 키운다고 했다. 너희 엄마는 너희를 돈 때문에 키우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아동 B와 C에게 “평생 너희 엄마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살아라. 수갑이나 차고 감옥이나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아동 C에게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랑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엄마와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저녁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아동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전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1586 판결)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가 이혼소송 중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만나 위와 같이 폭언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아동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으나 양육비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정서적 학대행위가 사실상 아동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성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 ▶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부모의 갈등관계나 이혼소송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1

친모가 친부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딴냐”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12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13세), D(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가 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고 현관문까지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배우자인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로부터 “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냐, 아들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D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앞에 있는 유모차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각 피해아동에게 노출하고, 배우자 B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129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 C의 머리를 때리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던짐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의 친부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딴냐”고 소리치는 모습을 자녀인 피해아동들에게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나, 같은 종류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비록 피고인이 자살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자살을 암시하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판결

- ▶ 친부가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자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여준 행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0. 선고 2018고정135 판결), 부부싸움을 한 이후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아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8고단2026 판결)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2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깨비 형상이 나오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행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724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6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뛰어다니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도깨비 형상의 모습이 나오고 도깨비의 음성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화장실 불을 끈 채 약 5분간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 피해아동을 베란다로 나가게 한 후 5분간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행위, 엎드려 뺨쳐 동작을 반복시킨 행위 등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724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III 결론

피해아동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전과(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아동 친모의 선처 탄원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발생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아동학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III

유기, 방임

1

친부가 자녀를 친척 집 복도에 두고 떠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083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 C(2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F와 별거하면서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F가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아버지 집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들을 F의 이종사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앞 출입문 복도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 2083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을 친척 집 출입문 앞 복도에 두고 떠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중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 판결은 위 죄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 ▶ 이 사건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나 F의 이종사촌에게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였어야 했으나 조치하지 않았고, 아파트 복도에 피해아동들을 방치함으로써 그 즉시 아동들을 보호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여 생명·신체에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유사판결

- ▶ 피고인의 남편 C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자녀인 피해아동(3세)을 혼자 양육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C의 고모할머니 D는 피해아동을 맡아주기로 동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친구 E에게 “남편의 고모할머니가 피해아동을 대신 맡아주기로 하였으니 아동을 고모할머니에게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D의 식당에 데려다주도록 하고 D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잠적하였다.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5131 판결).

2

친모가 영아인 자녀를 3차례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6620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5., 2018. 3., 2019.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 당시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을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6620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아인 자녀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친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녀를 생후 약 10개월, 생후 19개월, 생후 2년 7개월에 달하였을 때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외출한 행위를 방임으로 인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유사판결

- ▶ 피해아동(여, 6세)의 친부가 2019. 10. 8. 17:00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호자 없이 피해아동을 혼자 내버려둔 채 외출한 것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17 판결).
- ▶ 피해아동 C(남, 5세)의 계부이자, 피해아동 D(남, 1세)의 친부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아동들의 친모 B가 평소 가출을 자주하는 등 피해아동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같은 날 12:00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며 B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다른 가족에게 피해아동들을 돌봐달라는 등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들을 주거지에 두고 일을 하러 간 것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089 판결).

3

친모가 7세인 자녀를 2개월 동안 혼자 살게 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703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S시 원룸 주거지를 떠나 다른 시에 있는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을 혼자 거주하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703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7세의 아동인 자녀를 2개월 동안 혼자 살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만 7세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연령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책임지며 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성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결한 원룸에서 혼자 살게 하였고,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피해아동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다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 그럼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향후 자녀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친모가 떠도는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불결한 환경에 노출시킨 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3779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5세)의 친모로서, 친부와 헤어진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경부터 지인의 주거지인 여관 지하방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을 불러 음주 및 흡연을 하고, 피해아동을 어린이 집에 보내지도 않고, 피해아동에게 식사 및 양치질, 세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노숙인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숫대야를 놓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3779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 1282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자녀인 피해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어머니로서의 기본적 양육 의무마저 저버린 범행이고, 행위의 내용 역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위와 같은 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부모로서의 기본적 양육 의무마저 저버린 범행으로 보았고, 정서학대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없었으나, ‘행위의 내용 역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5

친모가 집안에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여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거주하도록 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2018고단6795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8세), C(7세)의 친모이다.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약 5톤 분량의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안 그대로 방치한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하고, 피해아동 C의 충치 치료를 위한 치과 진료와 사시 교정을 위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고단 6795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한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이혼 후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을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채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친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6

친모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녀를 방치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2020고단117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B(1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아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이 총 8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진공 청소기 흡입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1179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녀인 피해아동이 10개월간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방치하여 결석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피해아동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친권자를 비롯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녀나 아동인 의무교육대상자를 초·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다.
- ▶ 피해아동은 피고인 부부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더불어 피해아동 자신이 새벽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등으로 스마트폰 중독 내지 게임 중독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면서 늦잠을 자게 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결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을 보호·교양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은 피해아동의 학교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아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적극적으로 채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의 남편이나 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진지한 논의나 상담을 한 적조차 없다는 점을 문제시하였다.
-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무단결석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방법 또한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리는 등 그 수단이나 방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친모로, 2016. 6.부터 2016. 10. 까지 피해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하고, 특히 피해아동은 학교 특수반 소속으로 부모의 전화번호, 집 주소도 모르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의무교육 이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 7. 29. 선고 2017고단1596 판결).

7

친모가 자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은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121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12세)의 친모이고, 남편과 이혼 후 약 4년간 피해아동을 혼자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1219 판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자녀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교육적 방임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유사판결

- ▶ 친모가 자녀인 피해아동(6세)을 총 38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게 하여 방임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자녀를 무단결석시켰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분리조치되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데리고 다니며 무단결석시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8. 2022고단567 판결).

8

친부가 자녀의 병원비 지급에 관한 친모의 요구를 거부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19 판결)

사안

사실관계

친모가 친부에게 전화하여 피해아동(남, 10세)이 목감기에 걸려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며 “아이가 아프다. 병원비 2만 원을 퇴근길에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친부는 친모에게 “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내가 없을 때에만 아이가 아프냐”라고 말하며 그 비용을 주지 않아 피해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19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내용

결론

친모가 친부에게 감기에 걸린 아동의 병원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인 친부가 병원비를 주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친모가 위 방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친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친모와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감기에 걸린 피해아동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치료비 2만 원을 찾아 달라는 친모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나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9

친모가 친부의 학대를 제지하지 아니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7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의 친부는 2020. 8. 말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이 자신만 보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어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거나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거나, 이빨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깨물어 피해아동의 배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20. 9. 초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항 냉각기를 피해아동의 다리에 떨어뜨려 피해아동의 다리가 부어오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을 좌측 하지의 경골의 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친모는 친부가 피해아동에 대해 수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피해아동의 다리에 어항 냉각기를 떨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얼굴, 가슴, 배 등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생기고 피해아동의 다리가 부어오른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친부와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73 판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 4319 판결)	기각 (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친부를 제지하거나 친부와 피해아동을 격리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학대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보호자가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거듭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피고인을 분리하는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유사판결

- ▶ 피해아동(여, 10세)의 친모는 2012. 2.경 친부와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목을 누르고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고, 2019. 6. 5.경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것으로 112 신고가 된 사실도 있으며, 2014년경부터 약 7년 동안 친모가 술에 취하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친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2020. 9.경 친모가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 친모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를 막기 위하여 피해아동과 친모를 격리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묵인하고 넘어간 외에 피해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친부가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한 것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2101 판결).
- ▶ 피해아동(남, 4세)의 계부가 피해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친모가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1437 판결).

10

친모가 자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242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친모가 피해아동 A(여, 4세), B(남, 2세), C(남, 1세)의 외조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던 중 피해아동들 출산 이후 피해아동들에 대해 아동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2427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아동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며 어린 나이에 자녀를 연달아 3명이나 출산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아동에 대한 의료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유사판결

- ▶ 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남, 0세)을 양육하면서 BCG,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Hib(뇌수막염),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아동학대치사 등의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친부는 징역 4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친모는 징역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각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0. 선고 2021고합1 판결).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11

친모가 자녀의 의무교육 이수를 거부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192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남)이 2017. 3. 2. 중학교에 입학한 뒤 고도비만, 양측발목 관절의 신전 및 굴곡, 근육 부위 통증 등 건강장애를 사유로 2017. 3. 6.부터 원격수업으로 대체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오던 중, 친모가 2018. 4. 9.부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중학교장으로부터 가정방문 및 재취학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의무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촉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곧 휴거하고 모두 하나님 곁으로 간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세상 학교의 교육은 무의미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192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학생인 피해아동의 의무교육 이수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위 방임행위 외에 확정기로 전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도 함께 처벌받는 점,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중학교 의무교육의 이수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2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385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 C(남, 15세), D(여, 14세)의 친부모가 피해아동들을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 3850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각 40시간의 아동학대관련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현재 양육 중인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인정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 ▶ 아래 유사판결에서도 보는 것처럼 출생신고 미실시 자체만으로 바로 유기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출생신고 미실시로 인해 의식주,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학교진학 등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방임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판결

- ▶ 친모와 친부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6개월 내 접종이 필요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산후조리원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에 의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 피해아동이 인도되었음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아동을 데려가지 않은 행위는 방임에 해당한다.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10월, 친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2141, 2022고단31 병합 판결).
- ▶ 베트남인인 친모가 배우자 F와 이혼 전(2014년 이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사이에서 자녀를 2013년경 출산한 후 피해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후인 2017년 F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8년 출생신고를 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식주, 예방접종 및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등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는지 살펴보았고, 2심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아동에 대한 예방접종기록표까지 고려했을 때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7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10 판결).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7874 판결). 즉 출생신고 자체를 제때에 하지 않았는지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예방접종 등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여부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친부가 신생아인 자녀의 입에 공갈 젓꼭지나 젖병을 고정시키는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의 친부는 주거지 안방에서 2021. 1. 10. 생후 약 60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입에 공갈 젓꼭지를 물리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갈 젓꼭지를 피해아동의 볼에 고정시킨 후 옆드려 놓고, 2021. 1. 11. 수유 쿠션의 구멍에 젖병을 꽂아 고정시킨 후 반듯하게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얼굴에 젖병이 꽂혀 있는 수유 쿠션을 올려놓아 수유쿠션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덮은 상태에서 젖병이 피해아동의 얼굴과 직각이 되게 일명 ‘셀프수유’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징역 3년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생아 자녀 입에 공갈 젓꼭지나 젖병을 고정시킴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행위 외 다수의 아동학대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공갈 젓꼭지나 젓병을 아동의 신체에 고정하여 두는 경우 아동이 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공갈 젓꼭지나 젓병을 고정시켜 둔 뒤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친모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단1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 C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였던 E 사이의 아들인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다. 남자친구와의 불화 및 경제 형편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가 운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3kg의 저체중으로 태어나 건강상태가 위태로울 수 있는 피해아동을 탯줄을 묶지 않은 채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단15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II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피해아동이 태어난 날 위와 같이 베이비박스에 놓고 감으로써 자신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영아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어려운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영아의 유기는 미혼부모의 출산, 경제적 어려움, 원가정을 포함한 지지 체계의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한다. 임신 및 출산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고위험 산모를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아 유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와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와 상의하여 다른 가정에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출산 후 7일을 돌봐야 입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99 판결).

15

친모가 집주인에게 자녀를 맡겨둔 채 나간 행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24. 선고 2022고단3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D생)의 친모로, F의 주거지에서 F,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F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일 뿐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F에게 피해아동을 맡겨둔 채 주거지를 나가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24. 선고 2022고단30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주인에게 자녀를 맡겨둔 채 주거지를 나감으로써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아동을 F의 보호 아래 둔 채 유기하여 유기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행히 F의 헌신적인 양육으로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보호자의 방임 여부 판단 시,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집주인 F가 피해아동을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로 규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IV

사망사건

1

친모가 3세 자녀를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하여 사망케 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65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교제 중 피해아동 C(여)를 출산한 피해아동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임대주택에서 피해아동과 생활하다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J와 사귀게 되었고 일명 ‘번개모임’에 참석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아동(3세)을 홀로 둔 채 외출하여 다음날 귀가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이 생후 38개월의 유아임에도 외부 최고기온이 섭씨 30도~33도를 넘어서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은 채 약 77시간 동안 물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652 판결)	징역 20년
2심(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2189 판결)	징역 15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2176 판결)	기각(2심 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친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홀로 집에 방치한 행위는 상습 유기·방임에 해당하고, 그러던 중 피해아동이 사망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여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었다.

I 양형의 이유

1심은 위와 같은 행위였다가 피해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행위까지 함께 처벌하면서,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약 70 상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2심에서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아동에 대해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미숙한 지능지수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감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유기, 방임

IV

사망사건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도 않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

유사판결

- ▶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6세)을 유기하던 중에 살인의 고의를 일으켜 계속 유기하였음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되었다. 법원은 다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까지 함께 처벌하면서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등 판결).

2

친모가 자녀에 대한 친언니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21. 9. 16. 2021고단316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8세)의 친모로, 이혼, 직장 근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의 친언니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보내 양육을 맡기게 되었다. 친언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친언니가 피해아동의 태도를 교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언니로부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아동의 양쪽 눈에 불상의 이유로 멍이 들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는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사망한 시점까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친언니와 4차례에 걸쳐 약 3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친언니가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팔 등 신체를 수차례 때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전화로 피해아동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등 친언니의 폭행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메시지를 통해 친언니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복숭아 가지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언니가 복숭아 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복숭아 가지 묶음’ 1개를 구매한 뒤 친언니의 주거지로 발송하였고, 친언니는 위 ‘복숭아 가지 묶음’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롯한 신체를 수회 때렸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 3168 판결)	징역 3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심 (수원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 6602 판결)	징역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어머니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만 8세로 더욱 특별한 보호·양육·치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1차적

양육 책임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양육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친언니의 신체적 학대를 묵인하고,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친언니는 복숭아 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롯한 신체를 수회 때렸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의 착수 전에 위 복숭아 가지를 구입하여 친언니에게 제공하였고, 병의된 귀신을 빼내기 위하여 복숭아 가지를 직접 친딸인 피해아동의 몸에 접촉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친언니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학대 방조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아동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친언니와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현재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을 보호, 양육, 치료할 1차적 책임은 친권자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 ▶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 환경에 방임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친언니와 그의 남편에게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점, 친언니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행위를 방조한 점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하였다.

3

친부가 자녀인 자폐아동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동여맨 뒤 아동의 몸을 세계 안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2. 7. 1. 선고 2022고합74 판결)

사안

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5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로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형을 양육하여 왔다. 약 1년 넘게 자폐아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육아와 생활의 어려움, 지병인 허리디스크의 악화로 허리 부위 심한 통증 등으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잘 시간이 되었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고, 평소 앓던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 방 안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전신을 돌돌 말아 꼭 동여맨 뒤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세계 안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약 30분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함으로써 흉부 압박, 코와 입 막힘에 의한 질식사로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였다.

공소장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피해아동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약 30분간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Ⅱ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2022. 7. 1. 선고 2022고합 74 판결)	징역 5년,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Ⅲ 결론

친부인 피고인이 자폐아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위와 같이 ‘감각놀이(자폐아의 흥분상태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아이가 차렷 상태로 누운 상태에서 이불을 가슴부터 발끝까지 말아준 뒤 스스로 나오게 하는 훈련이다)’를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이불로 감싼 뒤 피해아동의 몸을 세계 안아 압박한 뒤 풀어주는 행위를 30분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학대함으로써 흉부 압박, 코와 입 막힘에 의한 질식사로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 없는 초범이며 1년 전 이혼한 뒤 피해아동을 어렵게 양육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이 심한 소아기 자폐증상을 보인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보았다.
- ▶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아동의 윗입술 안 점막 손상, 주변 점막에 다수의 점출혈, 아래턱 부위에 피부까짐, 피해아동의 배개에서 혈흔이 발견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 의과대학 교수의 점상출혈은 이불로 말아서 재운 행동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코와 입을 막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으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제2부

보육, 교육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I

신체학대

1

유치원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3127 판결)

사안

사실관계

유치원 교사 A가 피해아동(남, 6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아 사물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고 몸을 수차례 흔들어서 양팔이 굵히고 멍이 들게 하였으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신발을 강제로 벗겨 세게 집어던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3127 판결)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결론

동료교사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둬으로써 아동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가 비교적 오랜 시간 행해졌는데도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 방조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복학대

2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세계 흔드는 등의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440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신생아인 피해아동(여, 생후 18일)을 돌보던 산후도우미가 피해아동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계 흔들고,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일어나 약 8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 피해아동을 안고 거실로 나와 양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다리를 잡고 앉으면서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을 3~4회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이후 약 7초 동안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피해아동의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듯이 피해아동을 흔들었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 4402 판결)	징역 1년 4월,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명령
2심 (대전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1노214 판결)	징역 2년

판결 내용

I 결론

산후돌보미인 피고인이 출생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돌보면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몸을 세계 흔들거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피해아동을 거꾸로 든 채 물기를 털듯이 흔들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신생아를 들고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앞뒤로 흔드는 행위, 거꾸로 들고 이동하는 행위 등이 모두 신생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학대의 개념이 상대적임을 인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과학대

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이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쓰고 다닌다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운 행위 등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82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어린이집 교사가 교실에서 ① 피해아동 E(남, 1세)가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E의 양팔을 뒤로 잡았다가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우고, ② 그물망에서 터널놀이하던 피해아동 D(남, 1세)가 터널 중간에 머물며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터널 밖으로 꺼내고, ③ E가 D에게 놀이기구인 교구를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④ E가 다른 아이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E를 힘껏 끌어 당겨 눕혔다가 재차 구석에 양반다리 하게 하여 앉게 한 후 양발 끝으로 E의 발목,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약 13초 정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⑤ E를 바로 눕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E가 다리를 뻗자 몸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팔꿈치의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 1823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 3373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쓰고 다닌 피해아동의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우고, 나아가 피해아동 D와 피해아동 E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어린이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또 아동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법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데, 법원에서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과학대

4

어린이집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가락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른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4271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 C(6세)와 D(6세)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C의 팔을 잡고 억지로 자신의 책상으로 데리고 간 후 울면서 저항하는 C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였고, C와 D의 양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 4271 판결)	징역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심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 1273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양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의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칠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위 행위와 함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다수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아동 C의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아동 D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톱에 스탬프용 잉크를 칠한 것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5

스포츠강사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축구장 밖으로 끌고 간 다음 뒷목을 잡아 누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합86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 스포츠강사이다. 피고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아동(13세)이 던진 공에 피고인의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축구장 밖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춘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합86 판결)	벌금 500만 원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2노25 판결)	벌금 500만 원

판결 내용

결론

스포츠강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축구장 밖으로 끌고 간 다음 뒷목을 잡아 누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공으로 반복하여 머리를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시 이수명령의 병과는 필요적이지 아니라 임의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월 간 주 1회 상담 내지 교육을 받은 점과 위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 ▶ 2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6

자신의 자녀를 때린 아동에게 복수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3219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들인 D(7세)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중 동갑인 E가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E를 만나서 놀이터로 갔다. 피고인은 E(7세)를 발견하여 놀이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하게 피해아동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피해아동에게 왜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으나,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때리도록 시켰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 3219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를 때린 아동에게 위와 같이 때리거나 자녀로 하여금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자신의 자녀를 때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서 아동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였다.



II

정서학대

1

어린이집 원장이 2세 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405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이자 OO반(1세~3세 미만)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OO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OO반 보조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아동 G(2세)는 다른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OO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 부스터)에 앉혀놓기로 공모하였다. 2019. 3. 2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26회(최소 2분에서 최대 49분)에 걸쳐,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식탁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4059 판결)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460)	기각(1심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자 교사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음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학대행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넘어 피해아동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았고, 보육 또는 식사 지도 목적에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초등학교 교사가 컴퓨터로 피해아동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글을 써서 다른 학생들이 보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20고정19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OO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아동 D(11세)는 OO초등학교 5학년 O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5학년 O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피해아동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4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아동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연습했어, 안했어, 너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웠어, 너 왜 대답 안 해?”하며 수 회 질책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 내용을 게시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을 일어나게 하여 “모니터 화면에 쓰여진 내용이 맞냐”고 물어 “맞다”고 답변을 하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다 써서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무서워 울자, “울음 그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업이 종료된 후 피해아동에게 연구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연구실로 오라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20고정190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III 결론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컴퓨터에 피해아동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다른 학생들에게 보게 한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고, 이를 반 친구들에게 확인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나쁜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이 영어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해아동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설령 일부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 10세의 아동에게 적절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3

중학교 교사가 아동이 야한 책을 보았다는 이유로 엎드려뺨쳐를 시킨 행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E(14세)는 위 학교 3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 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은 “현자의 손자 2”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야한 책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구, 어이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책을 들고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야한 내용을 더 찾으면 너 혼난다.”라고 말하며 위 책을 펼친 다음, 위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당시 위 반에 있던 20명 가량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E가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위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뺨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앞에서 그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뺨쳐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급생 F에게 위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책을 읽으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징역 10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 1183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결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업시간에 야한 책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뺨쳐를 시키고 동급생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게 하는 등으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심에서는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아동과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아동을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아동을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직후 진행된 3교시 체육수업 중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중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42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가정과목 교사로서, 1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A(13세)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아동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또 다른 날, “A야, 너 이해하냐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서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아동을 지목하여 비난하고, 피해아동이 가위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애들아 A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이어서 피해아동에게 “널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아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애들아 내가 A를 때리길라도 했니? 훌쩍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423 판결)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심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679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Ⅰ 양형의 이유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아동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피고인이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유치원 교사가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258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D(6세)는 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위 유치원 ○반에서, 피해아동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의자를 걸어 건드려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어서 사과해’라고 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 2585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I 결론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이 어떻게 발을 걸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피해아동이 부모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 추상적인 진술에 그쳤을텐데, 만 6세 아동의 언어능력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걸어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 ▶ 본 판결은 피해아동이 앉은 의자를 걸어 넘어뜨린 것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킨 것 역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6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에게 또라이 세포가 있다고 욕설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2654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고, 피해아동 D(11세), E(10세)는 위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이다. 피고인은 성폭력 대피훈련 교육 중 피해아동들에게 “또라이 세포가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너 또라이 세포가 있다. 또라이 세포는 암 유발에 쉽다, 잘라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다른 날, 피해아동 E로부터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아동에게 “왜 기다려, 빨리 안 꺼져?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빨리 가.”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다른 날, 피해아동 D와 다른 아동인 F와 여름캠프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아동에게 센터를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며 불이 꺼진 방안에 피해아동 혼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10분가량 있게 한 후 위 F의 손을 억지로 잡게 하며 사과를 하게 하고, 그때 피해아동 E가 “△△언니와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라고 묻자, 이에 피해아동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야, 그냥 가라, 싸가지 없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 2654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결론

아동복지시설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또라이 세포가 있다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피해아동을 보호·양육·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나, 학대행위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 시기는 건강한 언행을 배우고 올바른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도 아동에게 ‘너에게 또라이 세포가 있으니 잘라내야 한다’, ‘짜가지 없는 새끼야’와 같은 욕설은 아동의 인격 형성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7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아동과 놀지 말라고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514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교실에서 전학생 A에게 B를 가리키며 “너 B랑 놀지 마. B 나쁜 애야”라고 말하였고, B가 공용 책에 껌을 문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누르고 손으로 아동의 어깨를 2회 치고 발로 아동의 엉덩이를 3회 찼다. 또한, C가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시장이나. 교실이 니 것이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 5145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광주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노 390 판결)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초등학교 교사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놀지 말라고 말하며 때리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피고인의 용서와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로, 판결과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아동을 왕따시키는 행위,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도 정서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

8

축구클럽 감독이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아동을 따돌리게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1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축구클럽의 축구 감독이고, 피해아동(7세)은 축구클럽에서 탈퇴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위 축구클럽을 탈퇴한 피해아동이 위 축구클럽 선수들에게 “축구클럽이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축구클럽 선수들을 모아놓고 선수들에게 “E의 인사를 받아주지 말고, E와 말도 섞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축구클럽 선수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인사를 받지 않거나 피해아동을 피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과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1 판결)	벌금 400만 원,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대전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노3644 판결)	벌금 300만 원,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결론

축구클럽 감독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축구클럽 선수들에게 피해아동을 따돌리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그로 인한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의 사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판례는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9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강제로 재우고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290 판결)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0세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를 잠을 재우기 위하여 다독이던 중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한 차례 밀고,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않자 피해아동의 뒷머리를 들어 올려 앞으로 밀어 고꾸라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2세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아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치고, 피해아동의 등을 때렸으며, 피해아동의 턱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눌러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음식물을 밀어 넣고 입 밖으로 뱉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잡았다.

판결 내용

1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 고꾸라지게 하거나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1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290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2020노975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의 의의

- ▶ 아동들에게 제때 영양 있는 식사나 수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자의 중요한 역할이나, 아동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서까지 잠이나 식사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아동은 잠이나 식사를 더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아동을 적극적으로 양육해 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는 하나,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저해가 되었다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10

아기스포츠단 교사가 아동에게 수첩을 집어 던지고 주워가게 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375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아기스포츠단 교사로 5세 반 교실에서 총 23회에 걸쳐 수첩 또는 교재 등을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주워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2019. 11.경 아동 A와 B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듣지 않자 이들을 앞으로 내보낸 뒤 약 3분간 전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혼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아동 일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옷깃으로 눈물을 닦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2019. 11. 경부터 2019.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엉덩이, 얼굴, 팔 등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 3753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 결론

아기스포츠단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첩 등을 던져 피해아동에게 주워가게 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고 엉덩이 등을 밀치는 등 보호대상인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였으며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는 비록 5세라고 할지라도 수첩 등을 주워가게 하는 행위는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모멸감과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복학대

11

아동에게 친모에 대해 모함하는 말을 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16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12세)의 모친인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아동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너희 엄마는 바람을 피운다. 이 남자 저 남자와 다 잔다. 너희 엄마는 걸레다. 너희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16 판결)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 결론

피해아동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분노를 해소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했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고통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어린 초등학교생이고, 부모의 부정행위가 피해자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리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거나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입는 고통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

1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손으로 다른 아동을 때리게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4809 판결)

사안

사실관계

어린이집에서 A아동(여, 3세)이 피해아동(여, 3세)의 손에서 책을 빼앗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A아동에게 데리고 가 A아동의 머리를 피해아동쪽으로 돌려주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A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게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 4809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결론

어린이집의 교사가 다른 아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가해행위를 한 아동을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더라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해행위를 한 아동을 때리도록 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13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1268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어린이집의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남, 3세)이 다른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혼내던 중 피해아동의 오른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3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겼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 1268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비록 훈계와 교육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행위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 내지는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배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4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진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29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초등학교 6학년 2반 교실 내에서, 피고인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인 피해아동 D(남, 11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아동이 가지고 있는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아동의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 피해아동에게 주워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 2298 판결)	징역 6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 1837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잘못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판결 내용

III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물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아동의 친구들이 물통을 주워 피해아동에게 주려고 하자 “이건 버릴 것이니 줍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 다수의 피해아동들에게 모두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함께 처벌 받게 되었는데, 1심은 피해아동들이 문제아라거나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아동들 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아동들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들의 겪은 고통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아동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학생에 대한 교사의 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다수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였다.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위 언행을 한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위들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되며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5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08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 중 피해아동(여, 17세)을 포함한 3학년 학생들에게 “D(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은 오텅이 된 애들이다”라고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089 판결)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심 (대구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노 2761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아동들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IV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도 수업 도중 피해아동을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아동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료교사와 졸업생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해당 발언을 들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16

이웃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주를 강요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51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4세)의 이웃인 피고인이 2019. 8. 초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병신, 가 시나야”라고 욕을 하면서 아락소주 3병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매회 소주 또는 아락소주 2병 내지 4병을 마시게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51 판결)	징역 6월
2심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 550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다수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아동의 친모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유사판결

- ▶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여, 8세)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아빠 사랑하면 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맥주를 먹게 한 것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2. 선고 2020고단2942 판결).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17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081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피해아동 F(여, 3세)가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친 후 울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F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옆으로 이동시킨 후 F를 계속 주시하였고, 피해아동 H(남, 3세)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다는 이유로 H의 양팔을 잡아 앉히고 H를 계속 주시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081 판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노236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계속 주시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이외에 다수의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이 장난을 치고 울고 있다거나 낮잠을 자지 않고 뒹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것은 아동의 나이가 3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18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과 반복적으로 서로 “싫어”라고
얘기하는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정2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여, 20개월)이 “싫어”라고 말하자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자신의 앞에 앉혀 놓은 다음 “나도 너 싫어, 나도 싫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15분 이상 피해아동과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정20 판결)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659 판결)	기각 (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과 15분 이상 서로 싫다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때린 행위도 함께 처벌받았는데, 피해아동이 집에 와서도 ‘싫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교사들은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내가 왜 싫어?’라고 묻거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부정적 의사표현에 대해 교사가 말다툼하듯이 아동과 같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19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씻는 시간을 정해두고 아동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060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20. 10. 말경 씻는 시간을 6분으로 정해놓은 것을 피해아동이 지키지 않자 ‘6분 안에 안 나오면 문을 확 밀어버릴거야’라고 말하고, 2020. 11. 초순경 피해아동이 씻는 시간을 6분으로 정해놓은 것을 지키지 않자 ‘화장실 문을 유리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 문에 커튼을 달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 6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커튼을 걷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060 판결)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의 씻는 시간을 6분으로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문을 열거나 커튼을 걷어버리겠다는 등의 얘기를 피해아동에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도 다른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공동생활가정에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동이 불안감,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오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감정 상태 및 반응 등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훈육의 목적으로 위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아동이 6분 안에 샤워를 끝마쳐야 한다는 내부 규칙을 준수하라는 이유로 6분 안에 샤워를 끝마치지 않으면 문을 열거나 커튼을 걷어버리겠다는 말은 한창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으로서 불안감, 당혹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실제 피해아동은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20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행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362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E(당시 7세)의 일기 검사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애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피해자를)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F(당시 7세)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G(당시 7세)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른 아이들은 전부 급식실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만 혼자 급식실에 약 40분간 남아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H(당시 7세)가 교실에서 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넌 또 멍 때리고 있구나.”라고 수회 말하거나 피해아동을 ‘멍 때리는 아이’로 수회 지칭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3627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판결 내용

|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1학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거나 부적절한 말을 계속하는 등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복학대

21

중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화로 욕설을 한 행위

(제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1075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교사이자 피해아동(여, 13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같은 학교 학생인 남자친구와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성욕을 참지 못하겠냐. 너가 짐승이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쳐 돌은 것아”, “아니 그러니까 씨발 니가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쳐 앉아가지고 그냥 씨발 라면 뽕 생각이나 하고 이 쳐 죽일 것아, 이 개 미쳐가지고. 참 승질 나게 만드네. 아 씨발 이 친구 미친 거 아냐 이거”라고 욕설을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제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1075 판결)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판결 내용

| 결론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실에서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화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아동이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범이며 평소 피해아동의 부모 또한 자녀의 비행을 방임하고 교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평가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아동은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 학교폭력 문제 야기, 교내 흡연 등 중학생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생활지도를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교실에서 남자친구와 뽀뽀까지 하였다. 이 사건 후에 D는 친구들과 공모하여 소위 ‘조건만남’의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 ▶ 피해아동은 종종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꾸지람을 듣는 것을 어머니에게 불평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하고 그 녹음 내용으로 피해아동과 함께 학교, 교육지원청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 ▶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현행법 체포 후 석방된 피해아동을 집에 데려오지조차 못하고 심야에 다시 가출하게 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하였는바, 피해아동의 부모가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자녀를 적절히 보호, 지도, 훈육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이 피해아동은 교사들의 지도와 훈육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사들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의 부모 역시 비행을 일삼는 자식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방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고를 부추기며 교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매우 특수한 사정이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22

성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남자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1272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회사원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아동(남, 12세)에게 SNS 메신저로 ‘저러다가 se0’, ‘저러다가 누임신시키면’, ‘ㄹ텔걸?, I먹히는거 아니가’, ‘해본적있음?’, ‘여친있나’, ‘있으면 하고싶다는 생각들 텐데’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위행위에 대하여 ‘ㄷㄷ해 본적 있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아동이 ‘형은 해봤어요?’라고 묻자 ‘최초시작 초6, 그러니까 지금딱 ○○니나이네’라는 문자를 보냈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1272 판결)	벌금 200만 원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2029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성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양형의 이유

위 행위 외에도 다수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언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초등학생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낸 행위도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판결이다.

23

성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의 얘기를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합1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8. 16:30경 초등학교 운동장 구령대 계단에 앉아 놀고 있던 피해아동 D(남, 12세)와 F(남, 13세)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딸딸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 남자들은 여자들을 만나서 따 먹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 키가 165cm이고, 벌써 가슴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요즘 여자애들은 가슴이 막, 벌써부터 크다, 야동 보지 말고 실제로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D와 F가 친구인 피해아동 G(남, 13세)를 데리고 오자, 피해아동들에게 어떤 운동을 하는지 물어 본 다음, 태권도를 한다는 말에 “태권도를 하려면 자지가 튼튼해야 해, 자지 근육이 없으니 허당이구만, 자지 근육이 발달해야 진정한 남자야, 여친은 있냐? 키 160cm 여자애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남자는 여자를 빨리 사귀어야 된다, 6학년 애들이 벌써 키가 크고 예쁜 애가 있다, 요즘 여자 애들 벌써부터 가슴이 나온다, 그런 여자애들을 따먹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합19 판결)	벌금 1,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심 (광주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1노39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이 일시적으로 범해진 것이고, 야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한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성(性) 또는 이성(異性)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나이 많은 어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교육의 취지에서 하는 훈육이나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들

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D와 F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행위도 하여 강제추행죄도 유죄가 인정된 점,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 또는 추행의 정도나 횟수 등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위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얘기를 아동들에게 한 것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사판결

-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여, 10세)에게 “꼬마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뒤 피해아동에게 “섹스해봤냐? 가려줄테니까 여기서 해봐”라고 말한 것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865 판결).
- ▶ 놀이터에서 피해아동 B(여, 11세), C(여, 12세), D(여, 11세), E(남, 8세)에게 다가가 “뽀뽀해 봤냐”, “뽀뽀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집주소 어디냐” 등의 말을 수회 한 것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정 및 다른 범죄사실 등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합574 판결).

24

멘토링 수업을 하다 그만 둔 사람이 아동에게 “너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은 가겠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11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13세)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메시지를 통해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메시지로 다툼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외 “기초 파트너”, “너 기초생활 수급자 ㄴ”, “대학은 가겠니??”, “으이구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똥똥해” 등의 메시지를 총 4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창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116 판결)	벌금 500만 원
2심 (창원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907 판결)	향소기각(원심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멘토링 수업을 하다 그만둔 피고인이 메시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너 기초생활 수급자 ㄴ”, “대학은 가겠니??”, “으이구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똥똥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과 같이 아동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를 말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25

보육교사가 손가락으로 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한 부위를 찌르는 행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37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A는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F(만 5세)가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입 부위를 1회 찌른 것,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장난감을 치우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다가오자 배 부위를 1회 찌른 것,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찌른 것, 교실 내 개수대 앞에 서 있는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약 2개월간 1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370 판결)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판결 내용

I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이 마스크를 착용한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장인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 B도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동은 다수의 아동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의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26

이웃이 아동에게 아동의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얘기를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176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해아동의 이웃인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노상에서 피해아동(남, 6세)의 할아버지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그 할아버지는 어저께 ~에서 씹하다 나한테 들켜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1763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심 (광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노1661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이웃에 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죄도 유죄로 인정되고, 동종의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할아버지 등 아동의 가족 또는 주변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인 판결이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이 피해아동(남, 11세)의 어머니와 평소 다툼이 있던 중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너거 아버지 잡혀간데이, 너거 아버지 경찰서 갔다 왔을 건데”, “누구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멍청하다”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범죄사실까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797 판결)

27

이웃이 아동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듣게 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정11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D 및 D의 아들인 피해아동 E(15세)가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D에게 “장애인을 낳은 년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옆에 있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D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듣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춘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정110 판결)	벌금 300만 원

판결 내용

I 결론

이웃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듣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공포, 불쾌감,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듣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28

자녀의 친구에게 자녀와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말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738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고 B와 피해아동 C(12세)는 OO중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E 학원’에서, 피해아동이 평소 자신의 딸을 괴롭혀 왔고, 당일 피해아동의 괴롭힘으로 인해 딸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수업 중인 피해아동을 불러낸 후,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는 등 크게 소리를 치며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B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며 크게 소리를 쳐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738 판결)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판결 내용

결론

피고인이 자녀의 친구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소리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딸을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피해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어른인 피고인이 학원으로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불러낸 점, 목격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 이외의 다른 학생들도 놀라 피아노를 치지 못했으며, 학원 원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아동이 많이 울었던 점, 발언의 내용도 향후 추가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피해아동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아동이 본 건 범행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본 건 범행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보건대, 범행 직전 피고인의 딸이 피해아동으로 인해 울면서 집에 온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29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층간 소음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소음을 야기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175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20. 1. 11.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A호의 위층인 B호에 거주하는 사람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화가 나자 B호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아동(여, 15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컴퓨터에 고성능 우퍼 스피커를 연결시키고, 영상 또는 음악, 파일을 재생시킨 다음 볼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이 위 B호에 도달하게 하였는데, 피해아동에게 도달된 27회의 소음은 성관계에 따른 남녀의 신음소리가 포함된 음란한 영상의 신음소리 9회, 음악을 재생시킨 음악소리 7회, 불상의 파일을 재생시킨 불상의 소음이 11회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1757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층간 소음에 대한 복수의 의도로 위층에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영상 또는 음악 파일을 재생시킨 소음이나 성관계에 따른 신음소리 등의 소음을 위층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집을 처분하려고 매물로 내어놓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층간소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소음을 위층에 전달한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음란한 영상의 신음소리 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음악 소리, 심지어 소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불상의 소리 역시 위층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전달되었다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30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른 행위 등

(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고정559 판결)

사안

| 사실관계

D 아동의 모친이 D와 같은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피해아동 B(남, 6세)와 C(남, 6세)가 평소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을 타고 하원하는 D를 기다리던 중 통학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① B에게 “한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목살을 잡아 흔들고, ② C에게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고정 559 판결)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이 소리치고 손으로 목살을 잡아 흔들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별다른 양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 ▶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녀의 친구들인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도를 넘은 협박성 언행이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이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을 놀린 피해아동(남,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건방진 새끼, 이리로 와 봐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냐. 나 무서운 사람이야. 너 산에다 매장시켜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협박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555 판결).
- ▶ 평소 피해아동B(남, 10세)이 자신의 아들 C와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가 B야, 이 자식아, C에게 왜 짜질이라고 했냐? ○○는 왜 때렸냐? 개새끼야, 너 경찰서 가야겠다. 나쁜 새끼야. 그리고 너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서 놀아? 이 동네에서 꺼져. 니네 동네 가서 놀아, 나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피해아동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아동이 “C가 먼저 때려서 저는 반격한 거예요”라고 말하자 “반격이든 뭐든 한 번만 더 때리면 확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814 판결).
- ▶ 피해아동 G의 모친이 피해아동 D(10세), E(10세), F(10세)가 자신의 아들 G를 때렸다고 생각하여 놀이터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샷대질을 하면서 “너네가 G 때려고 모였지, 너네 이런 조폭단 왜 만들었냐, 너 E 왜 맨날 친구들 괴롭히냐, 어디서 말대꾸야 이 새끼야 입닥쳐, 니네 학교 안다니고 싶냐, 우리 G가 만만하냐,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교장실로 가게 빨리 따라와”라고 소리를 지른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고정1184 판결).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III

성적 학대

1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61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국어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불상의 여자 연예인 이름을 말하며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생식기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식기관을 나누자는 말인가, 그렇고 그런 걸 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하였다. 다른 날 국어수업을 하던 중, 30명의 학생들에게 “나중에 커서 임신키트 사용해서 임신한 거 확인하면 그 남자한테 가서 돈 뜯어야 된다, 애 지워야 할 것 아냐”라고 말하였다. 다른 날 국어수업을 하던 중, 30명의 학생들에게 “내 아들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 여자에 하나 임신시켜 오는 게 낫다, 임신하면 닥태 시키면 되니까”라고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616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심 (부산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07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전과 없는 초범으로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발언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가정방문교사가 아동 동의하에 입맞춤을 하고 음란 동영상 도달하게 한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6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아동 B(12세)의 가정 방문 교사인 자로서, 2018.10.경 가정 방문 수업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입을 맞추게 해 주면 피해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아동의 볼 또는 입술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맞추었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66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I 결론

가정방문교사인 피고인이 비록 피해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와 같이 입맞춤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으나, 성적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피고인이 SNS 메시지로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성적 학대행위이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3

대안교육기관 원장이 아동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은 행위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고단6328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안교육기관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D, C는 이 기관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E(15세)에게 “너는 남자랑 많이 해봤겠다, 제일 나이가 적은 남자는 몇 살까지 해봤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는 몇 살까지 해봤느냐, 남자 성기를 빨아보았느냐, 남자가 너의 젖은 빨지 못하게 해라 아니면 젖이 시키메진다. 성관계 시 어떤 자세로 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조건만남 어플을 찾아서 가입을 좀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D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너는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냐, 요새 애들은 앞에서 말은 안하는데 할 거 다 한다. 요즘 나이 많은 사람이랑 젊은 애들이랑 만나는 거 있지 않느냐, (조건만남)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조건만남 어플을 깔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조건만남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쪽지를 보내라고 시켰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고단 6328 판결)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 결론

대안교육기관 원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2차 가해를 하고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은 범행 당시의 상황, 오고 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직접 듣고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4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8778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담임하는 반 교실에서 교탁 앞에 의자 2개를 놔두고 학생들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 피고인의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 C(12세)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피해아동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에 약 1~2분 동안 손을 올려 두었다. 또한 다른 날, 위와 같이 책을 읽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도 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갑자기 피해아동의 허벅지 위에 약 30초 내지 1분 동안 손을 올려 두었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 8778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 3764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성적 학대의 고의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뒀으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성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본인이 담임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으며,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고의로 피해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5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수회에 걸쳐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진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24. 선고 2019고단768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주 2회 중학교를 방문하여 정보 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가 학교 컴퓨터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여, 12세)을 상대로 ① 2018. 5. 중순경 손으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고, ② 2018. 6. 중순경 전향의 행위를 반복하고, ③ 수업 중 피해아동에게 “너는 잘하잖아. 니가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④ 수업 중 타자연습을 하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24. 선고 2019고단768 판결)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928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중학교 교사가 피해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수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교육자인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12세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아동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서 성적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성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격려의 의도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6

음식점 사장이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296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아동 D(12세)를 발견하고 “가게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아동을 그 곳 식당 안에 앉게 한 다음, “이제 중학교 올라가지? 아저씨가 D 몸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용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니? 아저씨가 몸이 너무 궁금하니까 아저씨 뽀뽀 몇 번 해주고 몸 만지게 해주면 용돈줄게. 가게 위쪽에 창고에서 해주면 아저씨가 용돈을 줄게”라고 하였다. 그런데 겁에 질린 피해아동이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척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성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296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 결론

음식점 사장인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며 성매수를 하려고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시도하며 한 발언을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였다.

7

중학교 앞 노상에서 여중생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129 판결)

사안

사실관계

성폭력범죄로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2020. 10.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과 “나는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증거는 발목에 보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판결문 죄명은 특수강간입니다”, “섹스할 여자 구함, 카카오톡 정지여서 D로 메시지 보내세요. 참고로 남자친구 있는 여자는 메시지 마세요. 외모가 존에 여자는 돈 50만 드림, 평범 상위권 여자는 돈 30만 드림, 평범한 여자는 돈 8만 원 드림, 못생긴 여자는 여자 취급 안 함” 등이 기재된 쪽말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위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아동들을 향해 이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대금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하고 계속해서 버스정류장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E(여, 15세)와 F(여, 15세)에게 다가가 위 쪽말을 든 채 “뭘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129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결론

피고인이 현금을 지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쪽말을 들고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아동에게 쪽말과 현금을 제시하며 접근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인정되었는데, 범행 당시 경계선 지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판 당시 치료감호소에 다시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8

SNS 메시지를 통하여 키스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글을 보낸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608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B(12세)에게 “근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어차피 난중에 키스할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용돈 벌고 뭐 아님 마공 쉬어~~”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키스알바는 너가 기분나빠하니깐 다른 건 오때, 1시간에 10만 원, ㅅ, ㅅ, 어차피 첫경험은 해야줘, 못하고 있으면 바보취급당해, 알짱 15만 원, 현찰 바로 딱, 키스는 안하고, 얼굴 봤잔옹, 어차피 난중에 할까 용돈벌고 아다풀고 종징, 포옹은 안될까?”라는 SNS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기 전에 소원 한 번만 들어주라, 한 번만 하자 죽기 전에 꼭 이쁜 너랑 한번하고 싶다ㅠ, 용돈 줄게, 아 좀 함하면 안 되냐?, 진짜 하고파서 구래 너랑, 시간당 15000원이면 고급알바징”이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608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결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면서 위와 같이 키스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SNS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2세의 피해아동에게 성매수를 암시하는 문자를 집요하게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아동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이며,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반드시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였다.

9

아동이 신고 있는 양말을 매수하려 한 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4. 선고 2020고단165, 431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흰색 양말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말을 구입하여 냄새를 맡아야겠다’는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신고 있는 양말을 파실 생각 없으세요? 양말 팔면 만 원 줄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거절하며 걸어가자 다시 피해아동을 불러 세운 다음 “그럼 2만 원에 살게요”라고 말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4. 선고 2020고단165, 431 판결)	징역 8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서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이 사건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식점 후문 앞 의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있는 등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이 신고 있는 양말을 사려는 행위로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자 한 피고인의 의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10

피해아동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166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아동 D(15세) 및 피해아동 E(15세)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가방으로 가린 채, 미리 구멍을 뚫어 둔 체육복 상의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1663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 결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본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위와 같이 가방으로 성기를 가려 아동에게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해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1

학원 강사가 17세인 아동과 합의하여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7세)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인 피고인은 SNS 등을 이용하여 학원생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업 고민뿐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아동에게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키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 성관계를 가진 것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과 성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 25 판결)	징역 1년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1노 429 판결)	기각 (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17세인 아동과 합의하여 위와 같이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엄벌을 탄원하나, 피해아동이 만 17세의 나이로 미약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위 사건에서는 아동학대행위 여부는 국가의 후견인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 금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행사된 바 있는지에 주안을 두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전이 저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 종래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제305조 제1항)만을 두고 있었는데 2020. 5. 18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신설 규정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아동의 자의 또는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해아동의 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본 대상 판결에서 16세 이상 아동의 자의나 동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에 따라 16세 이상 아동의 자의나 동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성적 학대행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성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79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여, 14세)은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인터넷상에서 먼저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2020. 9. 18. 04:26경 주차장에서 피해아동을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2020. 9. 21. 19:11경 피해아동에게 “안에는 뭐입었나 볼까?”라는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9:16경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792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성관계를 가질 상대방을 찾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는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아동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이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자의나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에서 나아가 아동이 먼저 적극적으로 원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 즉, 피해아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별다른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 형성 없이 오로지 성욕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성관계는 그 자체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이미 피해아동이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그러한 성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13

15세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한 행위

(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5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가출한 15세 아동으로 SNS에 성관계 상대방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자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대구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424, 2021고합496(병합)판결)	무죄
2심(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56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3년

판결 내용

III 결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가출한 15세 아동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구토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간음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다른 아동학대 범행도 함께 처벌되었는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피해아동을 인도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1심은 피해아동의 요청에 따라 성관계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아동이 15세의 어린 나이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 ▶ 대법원은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14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에게 남자인 줄 알았다고 말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합187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중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피해아동 F(여, 15세)를 불러 “머칠 전에 때린 거는 네가 머리가 짧아서 남자인 줄 알아서였다. 머리가 짧아서 남자 애들 때리는 것처럼 때렸다.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합187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명령
2심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노36 판결)	벌금 2,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명령

판결 내용

| 결론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 신체적,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이며, 피해아동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머리카락이 짧은 여중생을 남학생으로 오인하였다는 외모 비하 발언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5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부인 시리즈의 영화가 많이 나왔다고 말한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286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학년 교실에서 피해아동(17세)을 포함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두환 대통령 시절 시행된 3S 정책의 3S가 뭘지 아냐, Sports, Sex, Screen이다, 당시 야한 영화가 유행했고, E이라는 영화에서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이 나와서 말을 타는데 큰 가슴이 이렇게 출렁출렁 썩시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 피고인의 가슴 앞쪽에 대고 흔들고, '그게 인기가 아주 많아서 15편까지 나왔고 그 뒤로도 부인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2860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에 위와 같이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부인 시리즈의 영화가 많이 나왔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이고, 역사 수업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1세의 남성 교사였고, 피해아동은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과 동작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라고 판단하였다.

IV

유기, 방임

1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 내에서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도록 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72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산부인과의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 팀장,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신생아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와 D는 신생아실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10~15명의 신생아들을 1~2명의 간호사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수유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 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수유를 하였다. 셀프수유란 보호자가 아기를 안아서 젖병을 잡고 직접 수유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쿠션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분유병이 쓰러지지 않게 받친 후 아기의 입에 젖병을 물려 아기 스스로 분유를 먹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729 판결)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무죄 피고인 C, D 벌금 300만 원

판결 내용

III 결론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이 신생아들을 일대일로 수유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신생아들 스스로 젖병을 문 채로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수유를 함으로써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신생아실의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는 신생아실 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방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한편, 병원장은 셀프수유와 같은 방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신생아실에서의 셀프수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생아 보호·양육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유사판결

- ▶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피해아동(생후 11일)이 계속 울고 보챌다는 이유로 아동의 입에 ‘공갈 젓꼭지’를 물린 다음, 토사물 등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는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손수건으로 위 공갈 젓꼭지를 감싸 아동의 목 뒤로 묶어 고정시킴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3. 15. 선고 2018고단2320 판결).

2

아동위탁시설의 장이 입소아동에 의한 폭력행위를 방치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791 판결)

사안

Ⅰ 사실관계

아동의 양육을 위탁받은 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시설의 입소자들로부터 시설에 입소한 아동 D, E 및 F가 피해아동 G(여, 12세)를 때리고,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Ⅱ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791 판결)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2심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 3189 판결)	징역 1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판결 내용

Ⅲ 결론

아동의 양육을 위탁받은 시설의 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소자들로부터 제보를 들었음에도 피해아동을 D, E 및 F와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임행위를 하였다.

Ⅳ 양형의 이유

위 방임행위 외에 시설에 입소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보호자가 아동학대 피고인의 아동학대행위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아동학대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동학대의 방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다수 있으나 아동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행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도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중복학대

1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왜 짱짱대. 시끄러워.”라고 말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125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0세)의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피해아동을 눕혀둔 상태에서 피해아동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짱짱대. 시끄러워.”, “왜. 왜 울어. 왜.”, “자, 안 자면 맞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총 5회 하였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타고 있던 보행기가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히자 보행기 하단을 발로 차서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125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결론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치고 보행기를 발로 참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중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복학대

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등이다.

2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 시간에 아동에게 한 ‘김밥말이’ 행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305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어린이집의 교사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남, 4세)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아동의 몸을 이불과 매트로 돌돌 말아서 누르는 일명 ‘김밥말이’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305 판결)	벌금 100만 원

판결 내용

| 결론

어린이집의 교사가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에 대해 위와 같이 일명 ‘김밥말이’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상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낮잠을 재우기 위해 하는 ‘김밥말이’가 신체학대일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판결

-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남, 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을 안아 눕힌 후 뒤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아동을 약 5분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잠을 재운 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160 판결).

비교판결

- ▶ 어린이집 원장이 점심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아동을 감싸 안아 재우는 과정에서 약 10분 가량 왼쪽 허벅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은 채로 압박한 행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힘을 주어 아동을 압박하거나 완력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아동 역시 다소의 움직임은 있지만 보채거나 크게 울거나 다리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심하게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9분 가량 후에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동학대행위라고 할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155 판결).

3

동료 보육교사가 다리로 아동을 압박하는 행위를 방조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이며, 피고인 B는 보육교사(만 2세 반)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친자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E(여, 만 1세 반)를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얼굴을 이불에 묻게 한 채 옆드린 자세로 눕히고 오른쪽 다리로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을 바르게 눕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질식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아동 G를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손과 다리로 아동을 압박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총 35회에 걸쳐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의 어린이집 ○○반(만 2세 반) 담임교사이다. 평소 원장 A가 아동들을 낮잠 재울 때 아동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하여 꼭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본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동들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아동 I를 재우는 과정에서 아동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몸과 다리 위에 양다리를 올린 상태로 강제로 낮잠을 재우는 것과 같은 행위를 총 16회에 걸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피고인 A 징역 9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2심 (대전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478 판결)	1심과 동일

판결 내용

III 결론

피고인 A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 E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아동에게 폭행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고 이를 당연한 것처럼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아동학대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 ▶ 영유아는 학대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스스로 이를 알리거나 신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육시설 내 교사는 아동학대를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인지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교사가 저지른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4

보육교사가 우는 아동을 내버려 두거나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323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2세)은 어린이집 원생이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간식을 건넸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먹으려 하지 않고 뺨은 간식을 주워 다른 원아의 등 뒤로 뺨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손을 밀쳐 제지하자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울다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안정 시키지 아니하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하원 준비를 하면서 피해아동이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하자 피해아동의 외투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아 하원 준비에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외투를 입은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3회에 걸쳐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323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판결 내용

결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는 피해아동을 내버려 둠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맞추지 않고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아동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작위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아동에게 해주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학대’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달래거나 진정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시간, 그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외투를 입혀주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해 약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아동을 3회에 걸쳐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 행위는 훈육이나 보육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각각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유사판결

- ▶ 어학원 교사인 피고인이 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얼굴에 골절상을 입은 아동(5세)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해당한다. 법원은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어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5473 판결).

5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인 행위와 교사가 이를 방조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2022고단84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 피해아동은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들로 1세에서 3세로 총 10명이었다. 피고인 A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 등을 3차례 꼬집은 것을 포함하여 총 2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이 입에 있던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초 간격으로 계속하여 피해아동들의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이 앓는 보행기를 들어 올려 피해아동들의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밥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아동들의 입에 강압적으로 밥숟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밥을 먹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보행기에 태워 들어 올린 뒤 피해아동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일 때, 발버둥을 치고 있는 피해아동의 발을 손으로 잡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강압적으로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849 판결)	피고인 A : 징역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심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254 판결)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피고인 B : 위와 동일

판결 내용

I 결론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에게 위와 같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1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 A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 양육하는 다수의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몹시 나쁘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기간만 한 달 반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식사나 수면을 거부하는 피해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어린이집을 폐원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징역 기간이 감형되었다.
- ▶ 피고인 B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 B는 아동학대 범행을 1회 방조한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다.

유사판결

-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같은 교실에서 동료 보육교사가 아동의 발을 때리고, 발목을 세게 잡고 누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였으나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동료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238 판결).

6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학년 아동들을 어깨동무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시킨 행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1707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5.까지 초등학교 1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경 본인의 담임 교실에서 피해아동 D를 비롯한 23명의 피해아동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어깨동무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회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들을 체벌하였다. 2019. 4.경 피해아동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려뺨쳐’를 수 분 동안 하게 하였다. 또한 2019. 4.경 오르골 악기를 틀면 피해아동 모두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 R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교실 문을 향해 오르골을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 1707 판결)	벌금 900만 원
2심 (대구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2853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II 결론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을 어깨동무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시킴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V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담임교사의 교체로 피해아동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으로 치료 중에 있었으며, 피해아동의 학부모 중 절반 정도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고인은 앉았다 일어서기와 엎드려뺨쳐를 시킨 것은 교육상 허용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 ▶ 또한, 피고인은 교육적 목적에서 엎드려뺨쳐 등 체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아동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시킨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5408 판결)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무기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배구부 코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배구 경기 참석을 위해 리조트에 합숙하면서 배구부원인 E(14세) 등 7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시합 준비 명목으로 리조트 외부를 걷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이 천천히 걸었다는 이유로 리조트 외부의 500m 구간을 30분 이내에 15바퀴 뛰도록 하고, 시간 내에 뛰지 못하자 다시 15바퀴를 30분 이내에 뛰도록 하였다. 또한 리조트 객실을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들의 동작이 늦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짐을 들고 방을 왕복하거나 짐을 풀었다 썼다를 반복하도록 하고, “너희들은 때리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괴롭히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새벽 2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 5408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판결 내용

결론

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배구부원인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이 무리한 훈련을 시킴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시키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아동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중복학대

판결의 의의

- ▶ 운동부 코치가 합숙 훈련을 하면서 훈련 명목으로 훈련과 직접 관련 없는 벌칙성 운동을 시키거나 짐을 싣다 풀었다를 반복하게 하는 등으로 잠을 재우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였다.
- ▶ 한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8

중학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335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자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1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중학교 특수반 학생이다. 피해아동 D가 같은 반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반성문을 제대로 작성해 오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반복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8. 11. 23.경 특수반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등교한 때부터 하교할 때까지 계속 반성문을 쓰게 하고, 29.경까지 교실의 전등과 히터를 끄고 문을 잠근 후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피해아동이 써온 반성문을 찢고 다시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무섭다.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아동을 G 지구대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경찰관과 면담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었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 3352 판결)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프로그램 이수
2심 (대전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 193 판결)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프로그램 이수

판결 내용

III 결론

중학교 특수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반성문을 반복하여 작성하게 하고 지구대로 데려가 겁을 먹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1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중학교 졸업을 앞둔 피해아동을 바르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과 과도한 의욕이 부적절한 방향으로 발현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특수반 담임교사로서 그동안 피해아동을 대한 기간 동안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신체적 학대 행위로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특수교사로서 특수반 학생들의 지도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 범죄사실과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큼을 인정하고 있다.

9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복도에 엎드리게 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139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의 담임교사가 피해아동 B, C, D, E(모두 여, 16세)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어 약 10분 동안 배를 바닥에 닿도록 바짝 엎드린 채 양 팔을 위로 뻗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해아동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 외에 담임교사는 피해아동 B, C, D가 화단 가꾸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게 “왜 안 하냐?”라고 하며 슬리퍼를 벗고 발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엉덩이를 1회씩 걷어찬 행위, 학교 교무실에서 책상을 닦고 있는 피해아동 C(여, 16세)에게 “역시 잘 자는 애는 크다”라고 말하여 가슴 등 신체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피해아동 F(여, 16세)의 목에 붙여 놓은 밴드를 보고 “목에 그게 뭐냐?”, “그만 좀 빨아라.”, “어제 집은 들어갔냐?”라고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피해아동 B(여, 17세)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찼었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1392 판결 및 2020초기648, 2021초기208 각 배상명령신청)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심 (대구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4368 판결)	벌금 4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3심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789 판결)	상고 기각

판결 내용

III 결론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위와 같이 학생들인 피해아동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발등으로 엉덩이를 걷어차며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일부 행위는 학생 지도의 동기 또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교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며,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전에는 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피해아동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행위, 이를 사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학생 지도의 동기나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교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분명하여 이를 교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 ▶ 2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증거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해고된 점,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에 비해 형을 감경하였다.
- ▶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히 정서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12. 23. 2016도13488 판결).

10

고등학교 교사가 장애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른 뒤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고,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고 말한 행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16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16시경부터 17시경 사이 ○○고등학교 도움반 1교실에서 사회 수업 시간에 피해아동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판결 내용

I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고,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차려고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외에도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 ▶ 그러나 법원은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규정 체계상 유형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로 포섭되기는 어려운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충분히 상정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범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회관념상 하나의 학대행위를 이중으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문제가 생기는 점, ③ 학대행위의 태양에 따라 피고인의 주된 고의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1

고등학교 기숙사 직원이 학생에게 부당하게 벌점을 많이 주어 기숙사에서 퇴출하려고 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32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남자 기숙사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I가 다른 학생이 기숙사 룸메이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너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 기숙사에서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I가 있는 기숙사에서 부당한 명목으로 벌점을 주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E와 F에게 ‘I 그 새끼랑 멀리 지내라, 그 새끼 버려라’, ‘내가 I 곧 보내니까 너희가 참아라, 벌점 같은 건 다 지워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I를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 고립시키고 부당하게 벌점을 많이 주어 기숙사에서 퇴출하려고 하였다. 이외에 피고인은 기숙사에서 피해아동 E(17세), F(16세), G(17세)에게 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주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아동 G에게 담배 1개비를 주고 피우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묻자 피해아동 F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아래 빈 소주병을 들어 출입구에서 있던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옆 바닥에서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공용실에서 피해아동 G에게 두 손을 뒷집지듯이 한 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피고인은 카페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아동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명치를 오른발로 밀어 차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아동 I에게 ‘동남아에서 먹힐 얼굴이다, 성매매해볼 생각 있냐, 하루에도 성관계를 10번 이상 할 수 있냐’ 등의 성적 발언을 2회 하였다.

I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춘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32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

판결 내용

III 결론

고등학교 기숙사 직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학교에서 왕따를 시켜 고립시키고 부당하게 벌점을 많이 주어 기숙사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술과 담배를 강요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에게 술병을 던지고, 머리를 박으라고 지시하고 정강이를 차고

명치를 밀어 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성적 학대행위 등 중복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다.

12

학원 원장이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아동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1회 내리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45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위 학원 수학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아동(남, 13세)이 수학 교재를 가져 오지 않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책을 안 가지고 왔냐. 거짓말 하지만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책상을 양손으로 잡고 엎으려는 듯이 행동하고, 피해아동을 복도로 따라 나오게 한 뒤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쪽 머리와 뺨 부위를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1회 내리쳤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459 판결)	벌금 200만 원

판결 내용

I 결론

학원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강생인 피해아동의 오른쪽 머리와 뺨을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1회 내리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및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결의 의의

- ▶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29조의3 제1항).

- ▶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즉,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운전 중 아동을 야간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비탈진 도로에 하차시킨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1319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센터의 이사장이며, 위 센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주로 보호하고,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의 승합 차량에 센터 아동들을 태워 운전하여 귀가시키던 중, 피해아동(11세)이 친구들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야간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약 79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비탈진 도로에 하차시켰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 1319 판결)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2심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 434 판결)	벌금 8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판결 내용

I 결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 시간대에 귀가하는 피해아동을 인적이 드문 비탈진 도로에 하차시킴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행위를 하였다.

I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회에 그쳤으며,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I

신체학대

II

정서학대

III

성적학대

IV

유기, 방임

V

종교학대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고인이 있으며, 이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아동과 다른 피해아동 2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 한편 2심에서 새롭게 인정된 증거는 없었으나 위와 같이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회에 그쳤으며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인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 반성, 기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1심에 비해 형을 감경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3부

무죄판결, 기타



I

무죄판결

1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397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D공원 정자 앞 벤치에서 피해아동 E(4세)가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피해아동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리며,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흔들는 행위를 2~3회 가량 반복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 3978 판결)	무죄
2심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 485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목격자 이자 신고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F는 여섯 차례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F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언성을 높이고 피해아동의 어깨를 붙잡아 흔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의 의의

- ▶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 ▶ 보육교사가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행위가 다소 부적절함이 있었더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
- ▶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훈육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보육교사가 아동의 귀를 붙잡은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304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교실에서 피해아동(7세)이 학습활동 시간이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저통을 들고 사물함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아동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더 걸어갔다. 다른 날,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강하게 누르고 압박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강하게 누른 후 압박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304 판결)	무죄
2심 (광주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노98 판결)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세밀한 분석은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귀를 잡고 앞으로 걸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앞으로 밀려서 걸어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발이 들리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걸어갔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위 직후 피해아동이 보인 태도나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해아동이 다른 여자 아동을 움찔하게 할만한 행위, 다른 남자 아동에 대해 양손으로 귀를 잡는 등의 행위 등 훈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피해아동의 행위, ② 각 행위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유형력의 내용,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태도(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를 살 수는 있으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귀를 붙잡아 들어 올리고, 아동을 들어 올린 상태로 두, 세 걸음을 걸어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 ▶ 이때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 ▶ 다만, 실제로 발이 들어올려진 것인지 앞으로 밀려서 걸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행위 이전에 적절한 훈육을 시도하였는지, 유형력의 내용, 본 행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태도 등은 법적 판단에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3

어린이집의 교사가 훈육의 목적으로 아동을 혼자 앉아 있도록 한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합6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0. 5. 21. 12:29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피해아동(남, 4세)을 어린이집 교실의 가방보관대 앞에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경까지 8회에 걸쳐 매회 약 4분 내지 약 26분 간 피해아동을 가방 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합60 판결)	무죄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324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가방보관대 앞에 혼자 앉아 있게 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였거나 다른 아동들과 다투었거나 생활습관 및 식사습관 교정이 필요하여 보육교사로서 훈육 목적에 의하여 한 행위로 보이는 점, 아동보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타임아웃’이라고 하여 문제행동을 한 아동이 혼자서 시간을 가지며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보육자와 차분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훈육방법이 통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훈육방법 중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모두 아동학대로 본다면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행위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 ▶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훈육과 아동학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 ▶ 아동을 혼자 앉아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이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동기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4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마스크를 거칠게 벗긴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고단2906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이다. 교실에서 아동(6세)이 친구들과 다투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친 후, 벗긴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이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피해아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아동을 시켜 식판을 치우도록 한 행위,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빼내어 서 있게 만드는 행위, 수업 교구를 주지 않아 수업을 받지 못하게 차별한 행위, 왼손으로 밀치는 행위 등을 총 17회에 걸쳐 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울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고단2906 판결)	무죄

판결 내용

|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CCTV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이며,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설명한 그 당시의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각 언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고의로 피해아동을 차별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CCTV영상 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피해아동이 식사를 하기 싫다고 하거나 제때 식사를 마치지 못할 때, 과제나 수업을 하기 싫다고 하거나 제때 마치지 못할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등 장시간 고집을 피울 때,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으로 다른 아동이 피고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대응이 항상 최선은 아니었고 다소 거칠게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제검사를 하지 않거나 식판을 치우도록 하거나 의자를 치우는 등의 행위는 대부분 피해아

동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아동들의 식사나 과제가 완료되어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던 적이 다수이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훈계 등의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도 상당 부분 확인된다.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아동의 배에 부딪히게 하거나 가방검사를 하면서 밀치거나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도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 ③ 수업배제 등 이른바 타임아웃 방법의 훈육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시간, 장소 등 위 훈육방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거나 훈육보다는 특별한 개입과 돌봄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가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결의 의의

-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은 또래보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보육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등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훈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포함 만 6세의 아동 총 28명을 보육하는 담임교사로서는 당해 보육환경 및 피해아동의 특성상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아동들의 원만한 보육을 위해 특별한 개입과 훈육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하였다.

5

초등학교 교사가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훈육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고합511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 C가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아픔을 느낄 정도로) 눌렀다. 또한, 피해아동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어 피해아동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부산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고합 511 판결)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심 (부산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 570 판결)	무죄

판결 내용

| 결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1심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고 보아 관자놀이를 누른 것에 대해서는 신체학대를,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학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타당성 있는 지도행위였고, 대다수의 아동은 ‘별로 안아팠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또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 것은 피해아동 C가 과격하게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 모습을 학부모에게 보여주며 상담을 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한 것이나 C가 거부감을 표하여 실제 촬영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곧바로 행위를 그만두었기에 정서학대라고 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 ▶ 1심 판결에서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지도행위가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라고 보고 있다.
- ▶ 또한 1심 판결에서는 교사 등은 훈육의 목적이 있더라도 훈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피해아동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은, 본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 ▶ 항소심에서는, 피해아동 C는 이 일로 전학까지 가게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아동의 신체에 상해에 준할 정도로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I

무죄판결

II

기타

6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는 등의 말을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03 판결)

사안

| 사실관계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① 피해아동 D(여, 8세), E(여, 8세)가 칠판에 자신에 대한 욕을 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들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라고 말하고, ② 피해아동 E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E로 하여금 교실 뒤편에서 약 20분 가량 손을 들고 있게 하고, ③ 피해아동 E에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④ 피해아동 E가 수업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 E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하고, ⑤ 피해아동 E에게 “공부를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 203 판결)	무죄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노300 판결)	기각 (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 ① 행위와 관련, 당시 피해아동들이 칠판에 피고인을 지칭하며 “멍청이. 죽일꼬다. 바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선생아! 니 얼굴에 낙서할 수 있으니까 망심하지마 이 똥개야! 개xx야! 시x아. 죽일거야. 넌 죽은 목숨이야!! 넌 바보야! 돼xx야!”라고 적어 놓았고, 교사는 이를 이유로 “학교에서 내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행위와 관련, 당시 피해아동 E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싸워 교실 뒤편에서 3~5분 정도 손을 들고 서있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교사와 피해아동 E의 관계,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손을 들고 있게 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 ③ 행위와 관련,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야단치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평소 대화하는 정도의 말투였고,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교사와 피해아동 E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행위와 관련, 쉬는 시간에 피해아동 E로 하여금 계속 문제를 풀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업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 피해아동 E 외에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점, 다른 반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었다는 점,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다음 날 다시 문제를 풀게 하였을 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행위와 관련, 피해아동 E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당시 한 말의 정확한 내용, 말을 할 때의 표정이나 태도, 표현의 방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 ▶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 언행을 할 당시의 말투나 표정, 태도, 교실 상황, 다른 학생들의 반응, 이후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7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수행하게 한 행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1474 판결)

사안

사실관계

초등학교 3학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남, 8세)이 운동장으로 나가기 위해 빠르게 걸어 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약 1분 동안 투명의자 벌칙(양손을 앞으로 뻗고 엉덩이를 뒤로 빼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수행하게 하였다.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 1474 판결)	무죄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297 판결)	기각 (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피해아동이 속한 반의 학생들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학급회의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 등을 하는 학생에 대해 30초 가량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후 피고인은 반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 위 규칙에 따라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투명의자 벌칙이 학생의 문제 행위를 훈육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한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 ▶ 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투명의자 벌칙이 훈육에 적절한 방법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는데, 학생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투명의자 벌칙을 정한 것이고,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은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한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유사판결

- ▶ 학급회의를 통해 공부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교실 앞에 꿰어앉아 있기, 투명의자 하기를 벌칙으로 정하고, 이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한 것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다소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265 판결 참조).

I

무죄판결

II

기타

8

초등학교 교사가 훈육을 위해 아동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아동의 팔에 상처가 난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고정992 판결)

사안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남, 8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앞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아이들과 싸워 혼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피해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대전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고정992 판결)	무죄

판결 내용

|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피해아동의 진술,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의 왼팔에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훈육을 위해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해아동이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피해아동의 팔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는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거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잡는 행동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 훈육과 신체적 학대행위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9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5485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교실 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여학생들을 향해 “내가 I 고등학교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생리 때문에 빠진 적이 있어서 너희도 그럴까 봐 못 믿겠다. 너희들도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학생 J의 이름 중 ‘성’을 바꾸어 부른 후 “내가 너 성을 바꿔 불렀으니 내가 너 성희롱한 거네. 성폭행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윤리와 사상’ 과목을 언급하면서 “아, 윤락과 사상. 사상과 윤락 들어라”고 말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5485 판결)	무죄
2심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노2129)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6.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언행이 객관적으로 보아 만 16세 또는 만 17세인 여학생들 또는 남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로서 피해아동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리’는 여성의 월경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성희롱’, ‘성폭행’, ‘윤락’ 등의 단어는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 ▶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라고 보았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은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로서, 과학수업과 관련이 없는 여성 자궁과 생리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피해아동 F 등 여학생들에게 “생리주기를 적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수업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의 생리주기를 적어내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129 판결).

10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

(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7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인 피고인이 ① 수업 중 ‘지지하다’라는 뜻의 영어(support)를 설명하면서 “찌찌(젓꼭지를 비유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지다”라고 말하고, “삽입이 뭐죠? 원래 없던 것을 어떤 것을 끼워 넣다 빼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고, ②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생일을 맞은 학생을 축하하기 위해 하트를 그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칠판에 하트를 그린 후 하트 윗부분에 젓꼭지 등을 추가로 그려 여성의 가슴을 연상시키게 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고, ③ 수업 중 대뜸 주어를 생략하고 “크다”라고 말하고 “유니섹스”라는 단어를 발음하면서 그 단어 중 “섹스” 부분을 강조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54 판결)	무죄
2심 (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78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위와 같은 언행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임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민감도나 저항력이 비록 성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언행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와 같은 언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언행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거나 정신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 ▶ 비록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 아동의 연령에 따른 민감도나 저항력, 이러한 언행을 하게 된 동기나 의도, 아동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1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이 원생인 아동의 입을 틀어막은 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6138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의 생활지도원이며, 피고인 B는 보육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D(3세)가 크게 울자 “울지마, 난 널 안달래 줄 거야.”라고 말하며 손과 이불로 피해아동 D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 B는 생활지도원들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 6138 판결)	무죄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2. 선고 2020노2548 판결)	기각(원심판결 유지)

판결 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대처에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평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보육원이 주택가에 있어 새벽에 아동이 우는 경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이 생활하며 숙식을 취하고 있어 새벽에 아동이 우는 경우 잠을 깨게 되어 수면 및 다음날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당황하여 피해아동 D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이불 끝으로 입 부분만을 막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 D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거나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 ▶ 아동의 입을 막았더라고 하더라도, 새벽 시간에 주거지 이웃과 보육원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 할까 봐 당황하여 일회성으로 한 점, 피해아동이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교판결

- ▶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피해아동(여, 1세)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울음소리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세게 틀어막으면서 손톱으로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힌 행위는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합193 판결).

12

학원 원장이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한 행위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4193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아동(10세)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학원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학원생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아동과 함께 있던 누나 2명, 친구 1명을 원장실로 부른 후, 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너 편을 들더라,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등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을 질책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아동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겠다면서 다시 원장실로 찾아오자 “그런 말하는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어”라고 말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고단4193 판결)	무죄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피해아동이 같은 학원생인 누나에게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학원 내 질서 유지와 피해아동의 훈육을 위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잘못된 언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만 10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아동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훈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의 의의

- ▶ 정서적 학대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는 행위이다.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에게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하는 폭언이나 위협, 별거벗겨서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 훈육은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올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지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한다.
- ▶ 정서적 학대행위와 훈육을 구별하는데 있어 사건이 발생한 상황, 아동의 이해 능력, 나이, 학대행위의 고의성, 학대행위의 피해가 아동의 마음이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II

기타

1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피해아동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도덕교사이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담임반 소속인 피해아동 C(여, 6세)가 식기 반납을 하면서 다 마신 주스팩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주스팩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 명의로 작성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I 소송 경과

심급	양형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818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심(인천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811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아동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에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아동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아동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아동들은 해당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보호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보호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다. 따라서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해당 피해아동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 ▶ 아동학대범죄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모두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피해아동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사실상 피해아동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다.

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발생으로 인한 원장 자격정지처분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단62136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소재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어린이집에 배치된 사회복지무요원이 3세 아동들로 구성된 교실에서 보조교사 업무를 하면서 36회에 걸쳐 위력으로 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5명을 추행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6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이 사건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I 소송경과

심급	결론
1심 (서울행정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단 62136 판결)	원장 자격정지(6개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내용

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아동학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교사를 지정하고 사회복지무요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D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님에도 그 보조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1차 위반의 경우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동학대에 관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처분기준보다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의 의의

- ▶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는 약 2개월 동안 5명의 영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영유아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영유아의 정신적 손해가 심대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1차 위반의 경우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6개월 원장 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판결

-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6개월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사안

I 사실관계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A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하였다.

II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으로 갑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 ▶ 아동학대 사건이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미치는 파급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 ▶ 아동학대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처분이나 앞서 본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 자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CD의 증거능력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판결 내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2. 2. 징역 6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2016고합520).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공판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19세 미만인 위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각 영상 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아동의 진술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채택·조사한 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위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아동의 진술을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18. 11. 29. 위 상고 및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2018도15169, 2018초기1107), 이에 청구인은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 녹화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 주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아동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일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주요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관하여 충분히 탄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결의 의의

- ▶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정성립으로 피해아동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인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 ▶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19세 미만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피해아동 본인이 아니라 조사 당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이 동영상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아동 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피해아동 본인이 법정에 나와 동영상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사판결

- ▶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여, 12세)에게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심에서 피해아동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영상물과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병합) 판결).

5

아동학대 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가 식별되는 언론보도금지 조항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사안

| 사실관계

청구인은 방송사 소속 기자로 자신이 취재한 아동학대행위로 처벌받은 피겨 스케이팅 강사의 얼굴 사진을 화면 배경으로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스케이팅 강사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함으로써 아동학대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송을 했다고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아동학대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 피고인’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판결 내용

| 결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대행위자가 식별되는 언론보도금지 조항은 합헌이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다. 이에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 피고인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정보 보도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고인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금지조항은 아동학대사건 보도를 전면금지하지 않으며 오직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할 뿐으로, 익명화된 형태의 사건보도는 가능하다. 따라서 보도금지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 피고인의 식별정보 보도라는 자극적인 보도의 금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2차 피해로부터의 아동보호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도금지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 ▶ 문제된 언론보도금지 조항은 아동학대 피고인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 피고인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피고인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주의할 것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I

무죄판결

II

기타

참고문헌

- 강희주, 성윤희, 이연지, 이정은, 정익중. (2022).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형사정책연구, 131, 145-177.
- 경찰청 (2019).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 서울: 경찰청.
- 김미정, 조규판. (2020). 중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훈육유형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8(1), 169-188.
- 리처드 벡, 유혜인 옮김,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나눔의 집, 2017.
- 맹경숙, 굿바이 아동학대, 미다스북스, 2020.
- 박우근,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지식과 감성, 2021.
- 박종훈 · 정혜민,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푸른칠판, 2020.
- 법무부 (2022). 아동학대 산고의무자를 위한 사례 Q&A 아동행복 지금바로LAW.
- 법무부 (2020).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법무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사례 길라잡이, 2021.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외,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2020.7.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 서울지방법변호사회.
- 송진성 (2018).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7(1), 217-249.
- 양형위원회, 2023 양형기준, 2023.
- 이수창. (2020).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명확성 검토. 헌법재판연구, 7(2), 201-229.
- Abuse Refuge Org. 2023. 9. 26. 인출.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 a lifelong problem'.
- Johns Hopkins All Children's Hospital. 2023, 9, 26. 인출. 'Kids and Alcohol'.
- Lippard, E. T. C., & Nemeroff, C. B. (2019, September 20). The devastating clinic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The Devastating Clinic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creased Disease Vulnerability and Poor Treatment Response in Mood Disorders. Retrieved February 3, 2023, from <https://ajp.psychiatryonline.org/doi/10.1176/appi.ajp.2019.19010020>
- Teicher, M. H., Anderson, C. M., Ohashi, K., & Polcari, A. (2013, October 28). Childhood maltreatment: Altered network centrality of cingulate, precuneus, temporal pole and Insula. Biological Psychiatry. Retrieved February 3, 2023, from [https://www.biologicalpsychiatryjournal.com/article/S0006-3223\(13\)00857-3/fulltext](https://www.biologicalpsychiatryjournal.com/article/S0006-3223(13)00857-3/fulltext)
- UNICEF, 2023. 9. 27. 인출. 'What is birth registration and why does it matter?'

판례색인

I 2020년

•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정304 판결	231
• 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2585 판결	119
•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5145 판결	123
• 광주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단5060 판결	23
• 광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고단5408 판결	211
•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2654 판결	121
• 광주지방법원 2020. 7. 29. 선고 2017고단1596 판결	70
• 광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5485 판결	243
•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2020고단1179 판결	6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4. 24. 선고 2019고단2290 판결	12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2618 판결	27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고단6620 판결	63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1663 판결	180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1707 판결	209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16 판결	130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115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253
•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3352 판결	213
• 대전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1 판결	12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20고정190 판결	113
• 부산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고합511 판결	23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616 판결	16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866 판결	16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4494 판결	2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고단6138 판결	247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25. 선고 2019고단4059 판결	111
•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083 판결	61
•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2018고단6795 판결	68
•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고단6328 판결	16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296 판결	17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2. 선고 2018고단990 판결	28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정155 판결	5

• 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3753 판결	128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608 판결	177
• 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3219 판결	108
•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2423 판결	117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14. 선고 2020고단165, 431 판결	179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1. 선고 2019고단3779 판결	66
• 인천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3978 판결	229
•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5131 판결	62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8778 판결	170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단4553 판결	8
• 청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129 판결	24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6. 16. 선고 2020고단48 판결	29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401 판결	6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703 판결	65

2021년

• 광주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78 판결	245
• 광주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4809 판결	131
• 광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1268 판결	132
• 광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155 판결	202
•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1272 판결	146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2427 판결	76
•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3769 판결	10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6. 8. 선고 2020고단1763 판결	153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고합119 판결	7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24. 선고 2019고단768 판결	17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3127 판결	9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0. 선고 2021고합1 판결	77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1192 판결	78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305 판결	201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 12. 선고 2020고합19 판결	147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03 판결	238
•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25 판결	181
• 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298 판결	133
•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정1906 판결	34
•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257
• 대구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823 판결	102

• 대구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단3086, 2021고단3529 판결	45
• 대구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고정559 판결	160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1392 판결	215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029 판결	37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493 판결	3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합187 판결	187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089 판결	135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792 판결	183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73 판결	74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51 판결	136
• 대전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4402 판결	100
•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4271 판결	104
• 대전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단1777 판결	40
•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단710 판결	33
•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203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129 판결	17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3. 선고 2021고단865 판결	148
•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1319 판결	22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8. 선고 2020고단2328 판결	4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1757 판결	15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797 판결	15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합574 판결	14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고합60 판결	233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520 판결	35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267 판결	3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고정20 판결	139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단1081 판결	138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1고정90 판결	4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1103 판결	11
• 수원지방법원 2021. 9. 16. 2021고단3168 판결	9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4051, 2021고단332 판결	4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089 판결	64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619 판결	4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2955 판결	33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555 판결	161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060 판결	140
• 울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160 판결	202
• 울산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317 판결	64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5257 판결	42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고단4445 판결	45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238 판결	20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1474 판결	240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1고단814 판결	16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2. 선고 2020고단2942 판결	137
•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1261 판결	30
•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731 판결	9
• 인천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고합652 판결	89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81
• 창원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고단3850 판결	79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791 판결	195
• 춘천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1437 판결	75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258

2022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병합) 판결	259
• 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56 판결	185
•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25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1853 판결	4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724 판결	57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1고단1976 판결	13
• 대전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고정992 판결	242
•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665 판결	19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24. 선고 2022고단30 판결	85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1246 판결	25
•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합459 판결	221
•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2022고단849 판결	207
• 부산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고단3524 판결	47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738 판결	15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370 판결	151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2860 판결	18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단1219 판결	7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3627 판결	142
• 서울행정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단62136 판결	255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판결	217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129 판결	5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2124, 2692(병합) 판결	49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99 판결	84
• 울산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고단2906 판결	234
•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5797 판결	51
• 인천지방법원 2022. 7. 1. 선고 2022고합74 판결	9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2323 판결	205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729 판결	193
• 전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단1586 판결	53
• 제주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1075 판결	144
• 제주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단2141, 2022고단31 병합 판결	80
• 제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고단150 판결	15
• 창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116 판결	149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등 판결	9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2. 선고 2022고단55 판결	17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6. 23. 선고 2022고단15 판결	83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125 판결	199
• 춘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합86 판결	106
• 춘천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정110 판결	155
• 춘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32 판결	219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260

2020-2022 아동학대 사건 판례연구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ncrc.or.kr
연구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디자인	(주)승림디엔씨

※ 사전승인 없는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